

조사보고 92-02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尹 瓚 赫

1992. 7.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 域 情 報 中 心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尹瓚赫

1992. 7.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머리말

본 센터는 北方國家의 投資環境, 制度, 産業 등을 중점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關聯制度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舊蘇聯의 실질적인 承繼者인 러시아연방과의 향후 경제협력은 極東地域 천연자원의 개발 등 對러시아 直接投資方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사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특징으로 ‘不完全性’과 ‘不安定性’을 지적할 수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함에 따라 완전한 政治·經濟的 主權을 보유한 獨立國家로 출범한 러시아연방은 광범위한 제도개혁작업에 한창이지만, 이러한 제도개혁작업은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라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제도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연방은 모든 부문에 걸친 독자적인 제도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제도가 不完全하다. 한편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일부 부문에서도 과도기의 시행착오로 인해 새로 도입된 제도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되는 등 不安定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制度研究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나 본 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 러시아연방이 마련한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소개함으로써 對러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기업들이나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制度의 ‘不完全性’ 문제는 러시아연방이 특정부문과 관련된 자국의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새로이 채택된 自國의 諸規定과 相馳되지 않을 경우에는 舊蘇聯의 제도를 援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록함으로써 보완하였으며, ‘不安定性’

면은 최근까지 알려진 改編方向을 소개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한계가 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외국인투자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으며 部門別 細部事項이나 制度變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소련실의 尹瓚赫 調査役이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2. 7

북방지역센터

所長 姜興求

目 次

머 리 말	3
I. 序 論	7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概觀	10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10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15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17
III. 企業設立 關聯 制度	21
1. 設立形態	21
2. 設立資本의 形成	25
3. 登 錄	30
IV. 運營 關聯 制度	35
1. 經營機構 및 統制	35
2. 人事 및 勞務	37
3. 原資材 및 設備	41
4. 製品의 販賣	44
5. 租稅 關聯 制度	55
6. 會計 關聯 制度	60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66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66
2. 優待措置	72

VI. 結論 및 示唆点	78
1. 불안정한 法律環境	78
2. 設立文書의 重要性: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重要	79
3. 투자동기가 現地의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80
4. 기타	81
 參攷文獻	 83
 附錄	 85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87
2.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100
3. 러시아聯邦 商品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 결정 No. 90	102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106
5. 韓·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障에 관한 協定	108
6. 韓·蘇間 貿易協定	115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	121

表 目 次

〈표 1〉 합작기업과 관련된 소련 주요 법령 및 규정	14
〈표 2〉 러시아연방 조세관련 법률제정 현황	57
〈표 3〉 주요 세금 및 세율	61

I. 序論

러시아정부는 産業生産 하락 및 物資不足 현상이 지속되고 GNP가 향후 2~3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計劃經濟體制를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資金을 確保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러시아정부가 적절한 資金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對外負債가 600억 달러에 이르고, 對外負債 償還能力이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고려하에 제공하는 公共借款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滿期가 도래한 商業借款은 점점 회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채무는 공공차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中央銀行의 貨幣發券機能이나 國債發行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련붕괴과정에서 늘어나는 財政赤字를 매꾸기 위해 화폐를 남발하였는데, 이것이 금년초에 실시된 가격자유화 조치의 여파와 함께 루블화의 급속한 平價切下와 超인플레이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경제개혁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援助나 借款 형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外國人直接投資 誘致가 바람직한 代案이다. 더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자본의 유입뿐 아니라 직접투자에 수반되는 資本主義 經營技法과 設備 및 體화된 기술까지 동시에 유입되는 二重效果를 거둘 수 있어 러시아는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서방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韓·蘇 수교 이후 對蘇進出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91년 8월 보수쿠데타에 이은 소련의 붕괴와 독립국가 연합의 결성이라는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여 초기의 과열되었던 대소진출분위기가 점차 냉각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대외지향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舊蘇聯지역이 갖고 있는 潛在 購買力과 풍부한 천연자원등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의 投資對象으로서 러시아가 갖는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향후의 한·러 경제협력이 극동지역 등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련의 외국인투자제도를 대체하는 舊蘇聯邦 構成共和國들의 독자적인 外國人投資制度에 대한 연구는 물론 구소연방의 실질적 承繼者인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책자 조차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獨立國家聯합이 '92년에 들어서야 출범했고 종전의 계획경제체제하의 법률들을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改正·制定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도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러시아연방 外國人投資基本法도 독립국가연합 결성 이전인 '91년 7월에 제정된 것으로 '92년 초부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지금의 제도보다 前向的인 外國人投資制度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금년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 기본법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된 제도정비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이 수립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對러시아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입수가 가능한 法律이나 政府決定 등과 함께 국내외에서 발표된 책자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의 독자적 외국인투자제도와 과거 소련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비교·설명도 곁들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독립국가결성 이후에 각 공화국들의 독자적인 법률이 소련법을 기초로 하여 각국별로 약간의 변

형된 형태로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와 함께 러시아의 독자적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舊蘇聯의 제도를 설명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각국들은 독자적인 자국의 법률이 없는 경우 새로이 제정된 자국의 다른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구소련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며 단지 소련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부규정으로 행정부나 기타 기관의 시행세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국가로 탄생한 러시아연방이 獨自的 法律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이를 완성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는 구소련의 제도를 援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은 II, III 등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문별 사항을 규정한 것이 소련법일 경우에는 III-1 나)에서 설명된 합작투자사에 적용되던 것으로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기본법이 설립형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지사 등 형태별로 다른 내용이 규정될 수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구분하여 수록하지 못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運營과 관련된 제도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부문별 細部 內容에 대한 보다 深度있는 調査가 결여된 점이 있으나 이는 차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의 주 목적은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概觀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가. 주요 관련법률

소련에서 외국인투자관계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87년 1월 13일자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 6362- XI ‘合作企業의 設立·運營에 관한 일반 指針’이며 소련 최초의 합작투자법은 1987년 1월 13일자 소련 閣僚會議 決定 제49호 ‘소련 영토내에서의 蘇聯組織과 資本主義國家 및 開發途上國家와의 合作投資會社 設立·運營에 관한 決定’(이하 각료회의 결정·제49호)이다.

이후 소련 정부는 1991년 7월 5일 소련최고회의 결정을 통해 ‘소련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을 채택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을 해왔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 소련에서의 합작투자와 관련된 기본 규정은 다음과 같다.¹⁾

- ① 소련 각료회의 및 공산당 중앙위 포고령 제1074호(1987. 9. 17)
· 그동안의 합작투자 경험을 기초로 상기 49호를 변경한 것.
- ②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1405호(1988. 12. 2)
· 국영기업, 협동조합 및 기타 기업(합작기업 포함)의 대외경제 활동에 관한 규정
- ③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203호(1989. 3. 7)
· 대외무역 희망기업의 등록절차; 수출입허가 및 규제장치

1)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Joint Venture, Acquisition and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and USSR*, 1991, p. 130.

Baker & Mc.Kenzie, *Joint Ventures in the Soviet Union: Law and Practice*, 1991, p. 11.

- ④ ‘소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대통령령’(1990. 10. 26)
- ⑤ 소련최고회의 결정 : 소련의 외국인투자기본법(1991. 7. 5)

나. 소련의 합작투자관련 규정의 주요 改定 內容²⁾

소련은 합작투자 관련 법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經營機構 및 經營權, 外國人投資 持分, 勞動問題 등에 관계 개정·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 議長과 社長 : 각료회의 결정 49호 제21조에는 이사회 의장과 사장은 모두 소련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련 내각은 1989년 5월 6일자 합작투자법 개정안인 승 385호(1989. 5. 6)를 통해 외국인 파트너의 투자지분과는 상관없이 前述한 2가지 중 한 자리는 외국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00% 외국인 투자를 허가한 1991년 7월 5일자 소련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認可節次 :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에 따르면 모든 합작기업은 財務部에 등록하기 이전에 蘇聯 內閣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소련 각료회의 및 공산당 중앙위 포고령 제1074호(1987. 9. 17자)에서 합작기업의 認可權限을 個別部處와 共和國의 內閣으로 이관하였으며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1405호(1988. 12. 2)에서는 이를 더욱 완화하여 단지 上級 行政機關의 承認만 받도록 하였다. 한편 1991년 7월 5일자 소련의 외국인투자법 제14조는 합작기업설립을 설립당사자—국유기업 혹은 기타—가 관련 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설립과 관련된 意思決定權의 委任作業을 지속해 왔다.

(3) 외국인 投資持分 :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에서 외국인투자의 最大

2) Kim & Chang 법률사무소, 『소련 외국인투자관계 법률 개관』, 1991, pp.10~17. 1991년 7월 5일자 소련 외국인투자 기본법의 내용은 필자가 원문을 검토하여 보완하였음.

持分을 49%로 규정한 이후 각료회의 결정 제1405호(1988. 12. 2)에서는 외국인투자 지분의 상한선을 확대하였으나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2인의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100% 단독 투자를 금지해 왔다. 외국인투자 지분의 최소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에게만 특정한 稅金惠澤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을 99%까지 허용한 것도 經營權의 완전지배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同규정 제21조에는 합작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사회에 의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합작기업 투자자간의 합의사항으로 미룸으로써 완전한 경영권 지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후 소련방 각료회의령(1990. 10. 26)을 통해 외국인투자 지분 100%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1년 7월 5일자 소련 외국인투자 기본법에는 외국인 100% 소유 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였다.

(4) 勞動關係 : 각료회의 결정 제49호는 합작기업에 종사하는 소련인 근로자의 賃金, 勤勞時間과 休息時間, 社會保障制度, 社會保險은 蘇聯法律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각료회의 결정 제1405호는 소련 근로자에게 루블화로 지급하는 물질보상, 고용 및 해고, 보수형태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합작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合作企業의 裁量權을 擴大하였다. 그러나 1989년 5월 6일자 합작투자법 개정안인 令 제385호(1989. 5. 6)에서는 다시 종전과 상반되게 합작기업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합작기업은 루블로 지급하는 임금의 형태와 금액, 상여금, 고용, 해고 및 기타 노동조건을 蘇聯法律에 규정된 市民權을 遵守하는 한도내에서 獨自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관련 문제들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문제들을 소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소련 시민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는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소련의 노동관계법을 고려할 때 합작기업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91년 7월

5일자 소련 외국인투자 기본법에는 노동관계를 합작기업과 勞動組合間의 集團勤勞契約書를 통해 결정하되 契約內容이 蘇聯 및 共和國法令이 정한 것보다 劣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조건은 근로자와 합작기업간에 1對1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5) 監査 :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제46조는 합작기업의 재무업무 및 상업활동에 대한 감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蘇聯 監査機構가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1405호 및 승 제385호(1989. 5. 6)를 통해 합작파트너간의 합의에 따라 장부기록 및 감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獨立的인 國際監査를 허락하는 등 합작기업의 장부기록 및 감사방법 결정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6) 會計 : 합작기업을 위한 재무부 회계규칙인 절차 제74호(1990. 6. 6)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합작투자법에 따르면 합작투자기업도 蘇聯 會計規定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트너간의 합의를 통해 '非蘇聯的' 會計規定을 사용하더라도 관할 부처인 재무부가 이를 허용해 온 것이 관례였다. 1991년 7월 5일자 소련 외국인투자 기본법도 蘇聯 法規에 따라 會計帳簿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기타 소련 法律의 適用

각료회의 결정 제49호는 연방 및 공화국들의 법률 중 합작기업과 관련된 조항들도 소련과 餘他國家間의 別途 協定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합작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상에서 언급한 기본규정 이외에도 합작기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 이전 법률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991년 7월 5일자 소련 외국인투자 기본법 제1조 및 제44조도 합작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외에 합작기업의 설립·운영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³⁾

3) 대한무역진흥공사, 『무공자료 91-60: 소련 합작투자 가이드』, 1991, p. 33.

〈표 1〉 합작기업과 관련된 소련 주요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비고
재무부령 No.53(1987.2.27) 및 통계청령 No.13-09 (1987.2.27)	회계관리 재무부 훈령 No.80(1988.5.3) 및 국가통계위원회 훈령 8-09에 의해 보완	회계관리 규정
소연방 국가계획위원회 지 시 No.30(1987.3.23)	합작투자기업과 Gosplan과의 관계	
대외무역부령(1987.2.26) 및 대외경제관계 국가	상품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수출입허 가에 관한 규정 위원회령 (1987.4.4)	수출입
소연방 중앙통계위원회 서 한 No.49(1987.1.13) (1987.4.24)	합작기업의 활동에 대한 통계관리 규정	통 계
소연방 재무부 훈령 No.124(1987.5.4)	합작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조 세
국가물자·기술조달위원 회(Gossnab) 시행령 No.74(1987.6.4)	-합작투자 기업의 물자, 기술조 달 및 판매에 관한 규정 -1987. 11. 4 同 위원회 시행령 139호에 의해 수정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 판매
소연방 재무부 훈령 No.45(1987.6.5)	합작기업의 자산 또는 이익에 대 한 보험 규정	보 험
연방중앙은행 훈령 No.1015 및 대외경제시행령 No.149(1987.9.22)	합작기업의 신용대출에 관한 규정	신용대출
소연방 재무부령 No.224(1987.11.24)	합작기업 등록절차 규정	기업등록
소연방 국가위원회령 No.10 / 310(1988.2.4)	합작기업 설립시 소련측 파트너가 제공하는 대지, 자연자원, 건물, 구 조물등의 자산평가 방법에 관한 사 항	자산평가
소연방 각료회의령 No.1104(1989.12.11)	특수제품의 수출입 허가제도에 관 한 규정	수출입
소연방 각료회의령 No.590(1990.6.1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회사설립
소연방 각료회의령 (1990.10)	외국업체의 100% 투자가 가능하 도록 규정	투 자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공화국의 經濟主權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연방 外國人投資基本法('91. 7. 4)을 制定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관련법률을 모두 제정할 수 없는 관계로 '91년 말에서 '92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蘇聯法律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蘇聯 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適用에 관한 規定을 제정하여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왔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91년중 企業, 合同組織에 관한 蘇聯聯邦法의 러시아共和國에의 適用節次에 관한 러시아공화국법', '러시아공화국 法施行 節次에 관하여', '기업, 합동, 조직 및 시민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臨時課稅 節次 導入에 관한 러시아연방 最高會議 幹部會의 決定'('91. 4. 19) 등 여러가지의 훈령을 제정하여 러시아연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연방의 재구성 과정에서 협의되었던 경제공동체조약('91. 10. 18)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공화국 안의 조정요소를 도입하여 연방권한이 공화국으로 이전되는 과도기 동안 공화국의 법률이나 國際條約에 反하지 않는 경우는 聯邦法이 暫定的으로 適用된다고 合意하였다.⁴⁾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소련 당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들이 각 공화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91년 10월 현재 아래의 법률이 각 공화국에 적용된다"⁵⁾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연방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소연방 및 공화국의 시민기본법 : 1991년 5월 31일 제정, 1992년 1월 1일 발효

4) Anatoly Belov, "Lega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siness in the USSR*, December 1991, p. 60.

5) *Ibid.*, p. 60.

- ② 소련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 : 1990년 3월 6일 제정, 1990년 7월 1일 발효
- ③ 소련의 외국인투자 기본법 : 1991년 7월 5일
- ④ 개별공화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즉 러시아연방 외 외국인투자 기본법)
- ⑤ 소련 시민의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법 : 1991년 4월 2일
- ⑥ 소연방 대통령 포고령 '소련내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

그러나 ②번 법률은 러시아연방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이 1990년 12월 24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③번 법률도 러시아의 독자적인 외국인투자법이 이미 제정되었으므로 러시아연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래와 같은 다수의 소연방 규정도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⁶⁾

- ⑦ 소연방법(1990. 6. 14) : '기업, 활동, 조직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 ⑧ 소연방 재무성 지침(1990. 12. 29) : 합작기업의 이윤 및 합작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 ⑨ 소연방 재무성 지침 No. 147(1990. 12. 29) : 외국법인의 이윤 및 소득에 대한 과세
- ⑩ 소연방 재무성 지침 No. 5(1991. 8. 30)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Yearly Accounting Statements) 작성절차에 관하여

이 경우에도 ⑦, ⑧, ⑨번 법률은 러시아연방의 獨自의 租稅關聯 法律이 대폭 개정·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법률도 1992년 1월 1일부터 遡及適用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이 미뤄진 경우가 많으므로 소련법률의 並行檢討

6)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local Presence in the Republic of Russia*, 모스크바에서 '92년 3월 31일~4월 1일에 개최된 국제회의 자료, p. 41.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연방법이나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蘇聯 당시의 法律이나 關聯 規定이 러시아연방에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그 適用節次를 규정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소련법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러시아내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러시아 행정부나 대외경제은행등 주요 정책수행기관의 지침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⁷⁾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투자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기초는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1991년 7월 4일 제정, 1991년 9월 1일 발효)이다. 同法 제5조는 러시아연방내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同法, 기타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關聯法律, 國際協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상의 관련 규정이 러시아연방 법률과 상이할 경우 국제협약이 우선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한국등 소련과 投資保障關聯 協定을 체결하였던 국가들로서는 同 條約이 러시아연방으로 承繼되는지 여부가 관심이다.⁸⁾ 한국의 경우는 盧莊愚 상공부 통상협

7) 상기 내용은 Business International이 런던에서 6월 16~18일에 걸쳐 개최한 “The Outlook for Joint Ventures,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in the New ‘Soviet Union’” 題下の 세미나에서 필자가 확인한 내용임.

8) Rafael Naghapyants, “Encouragement and Mutual Protection of Investment”, *Foreign Trade*, June 1991, p. 9. 同 자료에 따르면 소련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중국 등 14개 국가와 투자 보장관련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였음.

Business International, *The Outlook for Joint Ventures, Investments and Privatization in the New “Soviet Union”*, '92. 6. 16~18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자료, p. 16. 同 자료에 따르면 소련 최고회의는 1991년 5월 29일 14개 협정을

력국장이 5월 7일 쇼힌(Shokhin) 러시아 부수상과 함께 방한한 코프체프스키 아주국장과 통상실무회의를 열어 '92년중으로 러시아와 貿易·投資保障·二重課稅防止 協定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⁹⁾ 종전 내용의 대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92년 1월 1일부터 가격자유화를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법의 몇가지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니센코(Denisenko) 러시아 경제부 外國人投資委員會 제1 부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¹⁰⁾ 투자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고, 投資規模別로 登錄擔當 行政官廳을 구분하며 외환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용할 루블貨 換率 設定 問題 등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법등 기본법률 외에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 활동과 관련된 러시아연방 규정의 종류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¹¹⁾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러시아정부 결정 No. 26(1991. 11. 28)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를 규정(투자자본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따름)

승인했으며 서방국가들은 10개국에 비준하였음. 러시아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는 이미 同 조약의 계승을 합의하였으며 기타 국가와도 이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9) 『한겨레신문』, 1992. 5. 8.

10) *Tass*, April 10, 1992.

11) Alexandr Minakov and Irina Savelieva, "Privatization and Legislation", *Business in the Ex-USSR*, March 1992, pp. 81~82.

Anatoly Belov, *op. cit.*, p. 60.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 41

———, "Law on Foreign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in the Ex-USSR*, January 1992, p. 68.

- 석유 · 가스산업, 석탄광업의 경우는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특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 ②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의 기능에 관한 러시아 최고회의 간부회의 결정(1991. 10. 18)
 - 러시아연방 상의가 외국인 회사나 조직의 러시아연방내 사무소 설치 허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
- ③ 1992년도 러시아연방의 경화준비기금(Russian Republican Currency Reserve) 형성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1991. 12. 30)
 -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여 얻은 경화수익의 일부를 러시아공화국 경화준비기금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와 비율을 결정
 - 정부내 경화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경화수입의 일부에서 경화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함.
- ④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관한 러시아정부 포고령 제32호(1992. 1. 15)
 - 1992년 1월 15일자로 러시아연방내에서의 관세를 폐지. 4월 1일자로 러시아의 관세를 도입하기까지 관세 및 기타 비용(tolls)은 없음. 러시아 경제 · 재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절차에 따라 관세부(Customs Depts.)가 관세형태(Customs formalities)의 대금을 징수
- ⑤ 대외경제활동 자유화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1992. 1. 29)
 -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이 특별한 허가없이 무역업, 중개업, 기업인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러시아 국민들이 수입하거나 이들에게 우송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면제
 - 기업이나 개인의 무역업무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
- ⑥ 러시아연방내 금융기관 및 은행활동 규칙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1991. 8. 25)

· 러시아연방내의 금융기관 활동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 ⑦ 러시아연방내 상품(용역 및 서비스)의 수출 쿼터 및 면허 부여에 관한 러시아연방 각의 결정 455호(1991. 8. 27)
- ⑧ 독과점 방지규정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러시아연방 반독점위원회 규칙(1991. 9. 25)
- ⑨ 러시아연방내에서 조합(associations) 설립·운영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 결정(1991. 10. 11)
- ⑩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1991. 10. 25)
그의 외국인 投資保障을 규정한 法律은 아래와 같다.

① 러시아연방 시민법

이 법은 ‘연방 및 공화국의 시민권한에 관한 기본규칙’을 고려하여 개정될 것임.

- ② 러시아연방내 소유권에 관한 법(1990. 12. 24 제정, 1991. 1. 1 발효)
- ③ 기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법(1990. 12. 25 제정, 1991. 1. 1 발효)

이상의 관련법과 앞서 언급한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소련 법률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企業設立 關聯 制度

1. 設立形態

가. 投資形態 및 投資對象

외국인의 러시아내 투자형태 및 투자대상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제도는 소련 당시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1991년 7월 5일자 ‘소련의 외국인투자법’ 제3조는 외국인의 투자방식에 대해 ① 소련의 법인 및 시민이 설립한 企業·組織의 持分 參加, ② 외국자본가 100%지분의 기업 설립, ③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 ④ 土地使用 및 기타 天然資源 利用權 취득, ⑤ 기타 형태의 소련 법인 및 시민과의 協定 締結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제36조~41조에는 유가증권 취득이나 투자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① 러시아연방의 자연인 혹은 법인과 合作으로 設立된 企業의 株式 取得, ② 외국인 100% 투자로 기업이나 現地法人의 설립, ③ 企業, 건물, 設備, 株式, 債券 기타 有價證券이나 자산의 매입, ④ 토지사용 및 천연자원 개발권의 취득, ⑤ 기타 재산권 취득 및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외국인의 투자방법을 규정(제3조)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구입형태로 투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이 소련 외국인투자법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련 외국인투자기본법 제37조는 ‘외국인투자자는 소련 법인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외화 및 소련 화폐로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정한 절차와 조건으로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35조에서는 외국인은 루블화나 외화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으나 루블화로 구입할 경우는 러시아 對外經濟銀行이 設定한 換率로 루블화를 구입하여야 하며 국가가 정한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구입한 루블화로는 주식을 구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대금을 외화로 지불한 경우 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되며 루블화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는 외국인투자자의 법정 자본 기여율이 50%를 초과하여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된다.

한편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40조(讓渡契約)도 투자형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讓渡에 관한 러시아법률에 따라 러시아 각료회의 혹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讓渡權을 부여받은 國家機構와 讓渡契約를 締結하여 재생가능 혹은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고, 기업이나 경제활동의 전면적인 수행을 위해 기업, 단체, 협회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國有財産의 活用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계약서의 조건은 양도의 성격,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5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양도계약은 現러시아연방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러시아 최고회의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形態

1991년 7월 5일자 소련의 외국인투자 기본법 제14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은 株式會社, 有限會社 및 其他 社會團體나 會社의 形態 혹은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에 금지되지 않은 임의의 형태로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련 내각은 '90년 6월 19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설립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투자형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점은 외국인 투자환경의 진일보한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소련이 1987년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했을

12) Kim & Chang 법률사무소, 『소련 외국인투자 관계 법률 개관』, 1991, p. 25.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만 허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합작투자사’란 ‘투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기업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식의 독특한 기업형태는 자본주의 개념에 미숙한 소련인들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 점에서 서방투자자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시켜 서방기업들이 합작투자사 이외의 다른 기업형태를 선호해 왔는데 주식회사나 지사등 기타 형태의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설립형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재량권이 확대되게 되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株式會社, 다른 經濟活動主體 등 러시아연방이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設立形態에 관해 특별한 規制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인 100% 소유기업 설립 허용과 民營化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國營企業의 매입 형태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對蘇 투자가 합작투자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소련의 외국인투자제도가 합작투자사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의 100% 소유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제도상의 제약과, 현지의 공장부지 확보문제나 기타 소련 내부의 문제를 소련측 파트너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립이 허용된 지금에도 러시아내 현지의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서방투자자들은 비록 합작투자사라는 형태는 아니나 합작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외국인 100% 독자출자이면서도 허구인 소련측의 파트너를 내세워 합작방식으로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서방측이 선호해온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설립도 가능해졌는데 러시아 공화국 내각은 1990년 12월 25일 러시아공화국에서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¹³⁾ 주식회사의 설립조건, 株主들의 권리와 의무, 株式의 流通 등 주식회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행정지침도

13) *Ibid.*, p. 25.

마련¹⁴⁾함으로써 주식회사에 관한 법적 정비는 이루어진 것 같다.

다. 러시아연방의 株式會社制度¹⁵⁾

(1) 株式會社의 設立 : 외국인을 포함한 법인 및 자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최소 法定資本은 폐쇄형 주식회사(closed joint-stock societies)는 1만 루블, 개방형 주식회사(open joint-stock societies)는 10만 루블이고 법정 자본이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는 러시아연방 反獨占委員會의 設立承認을 받아야 한다. 設立資本이 전부 현금일 필요는 없고 건물, 구조물 및 장비, 知的所有權도 出資資本이 될 수 있다. 설립자들은 적어도 법정자본금의 25%를 설립자들간에 분배하고 이를 2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청약인들은 최소한 청약신청액의 10%를 즉시 납입해야 한다. 설립자들만이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는 주식대금의 50%를 즉시 납입해야 하며 등록후 적어도 1년내에 株式代金を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일반에 대한 주식의 公開 賣却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주식 발행인은 주식구매자들이 검토할 충분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收入豫想分野, 위험부담, 株式發行價 및 10년 이내의 豫想價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고유의 권리 및 서구식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서방의 주식회사와 다른 규정으로는 株主들의 出資金을 루블화로 평가해야 하는 의무, 매년 純利益의 5% 이상을 출자하여 적어도 法定資本의 15%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 재정 및 상업활동을 감독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의무 등이 있으며 주식회사 고유의 권리로는

14) Larisa Korobkova, "Joint Stock Societies : Soviet Style", *Business in the USSR*, September 1991, pp. 16~18.

15) 보다 상세한 내용은 Kim & Chang 법률사무소, *op. cit.*, pp. 25~32 및 Larisa Korobkova, *ibid.* 참고.

주식대금을 외국화폐로 납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 1년내 주식발행을 취소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권리, 개인들에게는 記名式 株式만 발행하고 無記名株式을 제한할 권리, 法定資本의 25% 이내 범위에서 私債를 발행할 권리 등이 있다.

(3) 폐쇄형 주식회사와 개방형 주식회사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식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株式讓渡 權限이다. 폐쇄적 주식회사의 경우는 다른 주식소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소유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제한되며 개방형 주식회사의 경우는 株主가 자기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권리가 보장되며 주식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기업의 장래가 불명확하게 되고 새로운 주식 소유자의 行態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2. 設立資本의 形成

가. 出資形態

외국인은 現物이나 現金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特許權 등의 知的所有權도 투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분으로 유입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구소연방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13조에 따르면 합작기업의 출자자분으로 외국산 시설재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면제된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 제24조도 設立文書에 규정된 기한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法定資本에 대한 外國人投資 持分으로 러시아연방으로 유입되는 資産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련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現物이나 知的所有權을 出資額으로 평가하는 문제, 외화로 출자한 경우 이를 루블화로 換算하는 문제 등이 있다.

며 합작기업의 경우 파트너간의 出資持分 配分問題를 들 수 있다.

나. 出資持分과 出資額의 算定

出資持分은 쌍방간의 合意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합작기업의 승인을 검토할 때 출자지분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여겨왔는데 지분이 적은 경우 합작기업의 이윤을 소련측 파트너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¹⁶⁾

소련 각료회의의 결정 제49호 제12조에 따르면 出資額은 國際價格을 기준으로 雙方間 合意한 價格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가격이 없을 경우 출자액은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蘇聯側 出資分에 대한 協商範圍은 소련방 국가가격위원회, 고스플란, 재무부, 대외관계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었다.¹⁷⁾ 이로 인해 지금까지 현물출자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작파트너간의 협상시에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로 인해 현물출자액의 규모를 둘러싸고 종종 마찰을 빚어왔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設立資本에 대한 評價는 國際價格을 基準으로 出資者間의 合意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런 가격이 없을 경우 출자액은 출자자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액은 루블화 혹은 외화를 루블화로 換算하여 결정한다. 러시아연방은 '92년 1월 2일자로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국내의 왜곡된 가격체계를 수정하였고 국제시장가격 수준으로 제반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현물출자액을 협상하는 데 있어 애로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제도에 따르면 외국측 투자자의 현물출자의 경우 물자를 현지로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출자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¹⁸⁾ 러시아연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6) Baker & Mc.Kenzie, *Joint Venture in the Soviet Union*, 1991, p. 18.

17) *Ibid.*, p. 19.

18) *Ibid.*, p. 20.

知的所有權을 出資額으로 算定하는 방법은 통상 이러한 지적소유권 開發에 實際 使用된 費用, 蘇聯內 開發費用 혹은 類似技術의 價格을 적용하는 것이 협상시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의 평가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제도가 미비한 관계로 이것이 과다계산되어 대규모 허구자분이 형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¹⁹⁾

외국인의 외화 출자분을 루블화로 환산하는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구소련 제도에 따르면 商業換率에 관한 蘇聯邦 大統領 布告令('90. 10. 27)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는 달러당 1.8루블의 商業換率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는 適用換率이 協商對象이었으며 한국 기업도 이 문제를 두고 소련측과 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외화투자를 루블화로 재평가할 때 러시아 中央銀行이 對外經濟關係에 적용하는 환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율은 종전의 제도하에서 대외경제관계에 적용되던 商業換率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가격자유화와 함께 루블화의 점진적 兌換化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의 환율체계하에서 외국인의 經濟투자액을 루블화로 환산할 경우 외국측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民營化에도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면서 종전의 환율로는 외국인투자자가 소액의 자본으로도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자 외국인투자시 적용할 소위 '투자환율'에 관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²⁰⁾이다. 이와 관련 추바이스(Chubais) 國家資產管理委員會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시 적정환율을 달러당 10루블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²¹⁾ 루블화가 실제가치보

19) Larisa Korobkova, *op. cit.*, p.18.

20)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p. 27~28.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Itar-Tass News Agency, May 11, 1992, p. 7.

21) *Tass*, February 28, 1992. 환율과 관련하여서는 과실 송금부분의 환율부분을 참조. 한편 타스통신 4월 10일자에 따르면 데니센코(Denisanko) 러시아 경제부

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콘스탄틴 카갈로브스키(Kagalovsky) 러시아 정부 자문관은 현재 3元體制의 루블화 환율제도를 금년 여름까지 단일화하여 달러 기준의 固定換率制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自由市場 價格에 의한 變動換率과 外國人投資時 적용하는 투자환율의 2元體制로 운용할 것이라 밝히는²²⁾ 등 환율문제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종전의 소련 법률에서도 상업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 적용환율을 결정하는 등 유연성이 있었고 주식회사의 경우 평균 35달러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²³⁾으로 보아 이 부문은 당분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 現地金融의 活用

합작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의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에 대한 政府補助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점차 없애가는 상황에서 합작기업 설립자도 원래 政府補助金 같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초기 設立資金 및 運營資金에 소요될 硬貨를 외국으로부터 借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루블화 자금을 소련은행으로부터 용자받을 수 있다.²⁴⁾ 더구나 실제 투자사례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자들의 지분평가를 위해 사용될 특별투자환율은 시장환율의 1/5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투자자들의 지분은 정부가 지명한 회계전문 회사가 점검할 것이라 발표함.

22) 북방지역센터, 『CNAS 북방경제』 4월호, p. 137.

23) Larisa Korobkova, *op. cit.*, p.18에 따르면 가격자유화 실시 이전인 '91년 9월 당시에 주식회사 설립시 외화출자금을 루블화로 환산할 때 출자자간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비율이 통상 35달러 수준이라고 러시아연방 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함.

24) IMF, IBRD, EBRD, OECD, *A Study of Soviet Economy*, 1991, p. 88.

를 보면 경화자금을 소련의 對外經濟銀行(Vneshkonombank)으로부터 용자를 받기도 하였다. 단지 외국으로부터 경화자금을 용자받기 위해서는 對外經濟銀行(Vneshkonombank)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승인이 되었다.²⁵⁾ 또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금융당국의 재정보증을 얻기도 쉬우며 독일의 Hermes Bank, 일본의 Exim bank, 핀란드의 Finnish bank 등 서방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이렇듯 외국인투자기업은 용자등 소련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소련 내 국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금융체제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실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에는 현재 2,000여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나 50%인 1,000개 정도는 거의 파산상태이며 150개 정도가 외환거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0~25개 정도는 무역업무 등 포괄적인 경화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에서만 경화거래를 할 수 있는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가지고 있다.²⁶⁾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합작기업의 경화용자액은 약 12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제5장 2절의 사례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 25)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Joint Ventures, Privatization and Acquisition in the Eastern Europe & USSR*, 1991, p. 133.
- 26) 同 내용은 Business International이 '92년 6월 17~19일 런던에서 개최한 "The Outlook for Joint Ventures,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in the New 'Soviet Union'"이라는 題下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3. 登 録

가. 關聯 法律 및 擔當機關

외국인 합작기업은 登錄을 함으로써 法人資格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事前審査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승인은 등록 허가를 통해 나타난다. 등록사실은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의 합작투자법인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에 따르면 모든 합작기업은 財務部에 등록하기 이전에 蘇聯 內閣의 承認을 받아야 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점차 완화되어 단지 上級 行政機關의 인가만 받으면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였다.

소련은 외국인투자 승인과 관련, 투자부문에 대해 positive list 방법을 채택하였다.²⁷⁾ 투자가 허용되는 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② 특별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③ 합작기업의 외국인 파트너가 자본, 설비, 기술, 경영전문가 등 설립에 필요한 주요 요소에 투자하는 경우, ④ 수출증대 및 수입감소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91년 7월에 승인된 소련 外國人投資法은 종전의 positive list 방법을 변경하여 negative list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同法 제6조에는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활동종류가 소련과 각 공화국 별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株式會社의 경우 天然資源 開發, 木材加工, 特定 皮革製品 加工分野는 制限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登錄問題에 관해 외국인투자법 외에 '외국인투자기업 登錄에 관한 러시아政府 決定 No. 26'(1991. 11. 28)을

27) IMF, IBRD, EBRD, OECD, *op. cit.*, p. 85.

제정하였으며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러시아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결정’(91. 10. 18)에 따르면 러시아聯邦商議가 외국인 회사나 조직의 러시아연방내 사무소설치 허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2조는 러시아 재무부 혹은 다른 適法한 國家機關이 등록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러시아연방내 공화국이나 더 작은 규모의 行政單位(모스크바市, 상트 페테르부르크市 등)와는 상관없이 閣僚會議가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액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는 러시아연방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러시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러시아 재무부는 기업소재지의 지방정부 혹은 행정단위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다.²⁸⁾

한편 현재 검토중인 外國人投資法 改定案에 따르면²⁹⁾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0만 루블 미만(이에 상당하는 외화 혹은 고정자산)의 경우는 지방행정 당국, 1000만 루블~1억 루블 미만(이에 상당하는 외화 혹은 고정자산)의 경우는 外國人投資委員會, 1억 루블 이상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중앙정부가 등록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어 있다.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사실과 관련 정보는 國家登錄處에 수집된다.

나. 登錄書類

외국인투자기업의 登錄書類는 합작기업의 경우 러시아측 파트너가 設立申請書, 設立文書(合作企業設立 契約書 및 定款)을 러시아연방 재무부에 제출하며 외국측 파트너는 투자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

28)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 43.

29)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Itar-Tass News Agency*, May 11, 1992, p. 5.

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기타 필요한 별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소련의 외국인투자법과는 달리 合作會社와 外國人 單獨會社의 登錄書類를 區分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신청서류 및 포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設立文書

- ① 기업설립 목적 및 활동범위
- ② 투자자
- ③ 법정자본의 규모 및 조달방법
- ④ 투자자 지분
- ⑤ 경영기구 및 구성과 통제관계
- ⑥ 의사결정 절차
- ⑦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
- ⑧ 기업청산 절차
- ⑨ 러시아 법률에 일치되는 기업의 특수한 활동에 관한 조항

(2)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書類

가) 合作會社

- ① 설립자의 서면 등록 신청서
- ② 공증받은 설립문서 사본 2부
- ③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심사결과 보고서
- ④ 소련측 법인
 - 자산소유자의 법인설립 결정서류나 위임받은 자의 결정서류, 출자자로 참여한 소련내 법인 각각의 설립서류(모두 공증된 것)
- ⑤ 외국인출자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불능력 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⑥ 외국인투자자가 본국의 등록기관(trade register)이 발행한 초록, 혹은 외국인투자자가 거주하는 본국에서 국내법률에 따라 시민권이나 영주거주권을 보유한 사실 등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나) 100% 外國人投資企業

- ① 설립신청서
- ② 공증받은 설립문서 사본 2부
- ③ 외국인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불능력 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④ 외국인투자자 소속 국가의 등록기관이 발급한 초록(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⑤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심사결과 보고서

(3) 외국인투자 支社 및 外國法人의 支社

- ① 기업 최고 경영자가 서명한 지사등록 신청서
- ② 권한 있는 경영기구의 지사설치 결정 사본(공증 필요)
- ③ 지사설립에 관한 규칙 사본 2부(공증 필요)
- ④ 모기업의 설립문서 사본 1부(공증 필요)
- ⑤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의 등록기관이 발행한 초록 및 기타 본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⑥ 법이 규정한 기타 심사결과 보고서

지사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설립문서 중 清算節次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 사항은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책임있는 經營機構가 設立文書를 수정 혹은 변경하기로 결정한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공증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設立文書의 變更 혹은 修正 事項은 등록이 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현재 검토중

인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등록서류 외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會計監査會社의 證明書를 上記 登錄書類 외에 첨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³⁰⁾

다. 事前審査 및 登錄制限

대규모 建築 및 再建築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衛生 및 疫學擔當 機關이나 生態系 關聯機關으로부터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事前審査와 承認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개 공화국 이상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관련 공화국들의 合同委員會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러시아聯邦 生態系 및 自然保護 委員會가 承認을 한다. 합작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법정자본금이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는 러시아연방 反獨占委員會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³¹⁾

러시아연방 각료회의는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러시아 재무부 혹은 기타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등록신청을 한 21일 이내에 등록을 인정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들어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거부조건은 러시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나 서류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8조는 법원에 登錄拒否 決定에 대해 異意提起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련의 관련 법률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개선되었다.

30)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Itar-Tass News Agency*, May 11, 1992, p. 7.

31) Larisa Korobkora, *op. cit.*, p. 17.

IV. 運營 關聯 制度

1. 經營機構 및 統制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經營機構 및 構成과 統制關係, 意思決定 節次 등을 設立文書에 규정하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所有權 構造도 허가되었으며 합작기업의 대표는 파트너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獨自企業뿐 아니라 合作企業의 경우도 경영권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국영기업의 경우도 시장경제체제 도입 및 민영화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점차 移讓받고 있어 의사결정의 독립성도 신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때 경영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부문, 즉 기업의 意思決定 過程에 있어서 政府의 計劃이나 統制로부터의 獨立性, 所有持分에 相應하는 經營權 및 所有權限 등에 있어서의 독립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소련 제도하에서도 외국인의 경영대표권 제한이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고 러시아연방의 관련제도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소련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經營機構와 機能

합작회사의 最高 議決機構는 理事會이며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장이 책임을 진다.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에서 理事會 議長과 社長은 소련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각료회의 결정 1405호를 통해 개정하여 두 자리 중 한 가지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은 철폐되고 상호협상을 통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합작 파트너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

성되며 企業設立 文書에 그 名單이 기입되어야 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기업 운영전략과 관련된 사항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³²⁾ : 정관개정, 기업운영방침, 판매정책, 판매가격 결정원칙, 생 산품목, 투자, 인사정책, 장기금융 차입, 지사설치 등

나. 意思決定

이 부문에 관한 사항은 定款에 必須的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의 사결정에 관한 어떤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은 파트너 간의 협상에 따라 정관의 내용으로 포함되며 이는 향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³³⁾ 의사결정과 관련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5조도 設立文書에 滿場一致를 요하는 문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소련 당시의 중요사항에 대한 만장일치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重要事項은 定款에 規定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국인 출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효율적 統制權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³⁴⁾ 첫째, 合作投資 雙方이 相互合意를 통해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지위에 외국측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地位의 例로는 社長, 副社長 혹은 專門技術 取扱 幹部, 品質管理 및 資材部門, 마케팅 部門 幹部 등이 있다. 둘째, 설립문서에 特定한 決定을 담당하는 機構 및 人士를 明記해 두고 理事會의 決定을 따라야 할 事項과 經營者의 決定에 따라야 할 事項을 區分하는 것이다. 事案別로 多數, 過半數, 滿場一致 등의 결정방법도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만장일치 제도는 당초 소련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의 출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당시에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것인데, 1988년 12월 2일에 법개정을 통해 외국측 파트너의 참여

32) 대한무역진흥공사, *op. cit.*, p. 71.

33) *Ibid.*, p. 74.

34) Baker & Mc.Kenzie, *op. cit.*, p. 22.

지분 제한을 철폐한 이후 도리어 소련측 파트너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 실제 합작투자기업 운영 결과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제도가 오히려 기업 운영에 장애요소로 나타난 점³⁵⁾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만장일치가 필요한 문제를 설립 문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人事 및 勞務

가. 採用 및 勤勞條件

이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소련 당시의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 연방의 독자적인 규정으로는 최저임금에 관한 몇가지 포고령만 발표된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종전 소련법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규정이다. 한편 서방 기업들이 최근 러시아연방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개인사업가를 변형된 고용형태로 援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다. 개인 사업가들은 정년퇴임한 정부관리나 기업가로서 주로 물건이나 물자의 소재지, 착수단계에서의 협의대상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한다. 서방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前職에 대한 배려와 이들의 정직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보증보다는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라는 명칭으로 변형된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기도 한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33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원과 체결하는 集團勤勞契約 혹은 個別勤勞契約을 통해 직원의 採用, 解雇, 賃金, 休暇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35) 대한무역진흥공사, *op. cit.*, pp. 74~75.

피고용자 각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集團勤勞契約 條件은 러시아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열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人事問題에 관한 외국인투자 회사의 독자적인 결정이 일반적인 러시아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의 勞動關係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소련 당시의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및 해고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정 —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파트너간의 합의 — 에 따르나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集團勤勞契約書뿐만 아니라 設立文書에도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³⁶⁾ 이 문제에 관해서도 蘇聯法은 점차 외국인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왔다.

당초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제4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합작 회사의 직원은 주로 소련인으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합작기업이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또 소련 내국인과 외국인의 활동에 관해서는 소련 법률이 적용되나 外國人 職員의 賃金, 休暇, 年金 등에 관해서는 特別한 規定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特別한 待遇는 設立文書에 기재되어야 한다.³⁸⁾

급여지급 화폐의 종류에 관해서도 합작기업에 대해 재량권이 부여된다. 외국인은 경화나 루블화로 급여를 받거나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받을 수도 있다. 소련의 제도하에서는 합작기업이 공식적으로는 소련인 직원에게 외화로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소비재 물품을 구입해 주거나 소련 직원들을 출장보낼 때 외화로 일당을 주어 이를 되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³⁹⁾

36)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op. cit.*, p. 136.

37) *Ibid.*, p. 135.

38) Baker & Mc.Kenzie, *op. cit.*, p. 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은 구소련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합작기업과 근로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채용 및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합작회사는 소련인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2개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⁴⁰⁾

첫째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작기업은 社內에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 이들과 集團勤勞契約를 체결해야 한다. 1990년 12월 10일자 소련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5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단근로계약은 합작기업의 경영 및 근로자의 광범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집단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給與(보너스나 다른 물질보상 포함), 勤勞時間, 休暇期間, 合作企業의 責任과 勞動組合과 勤勞者의 責任, 生産技術 向上, 品質管理, 勤勞者의 資質 및 訓練, 職業安全, 勞動規律 등에 관해 규정한다.

둘째, 집단근로계약 이외에 합작기업은 근로자 개개인과 個別勤勞契約를 체결해야 한다. 개별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의 지위나 의무 등을 규정할 뿐 아니라 합작기업이 集團勤勞契約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합작기업의 근로계약에 규정된 이외의 작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에 따르면 이러한 勤勞契約는 被雇傭者에 대한 事前 通知와 勞動組合의 同意를 받아 合作企業과 勞動組合의 合意下에 契約를 解止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법에 명기된 사유를 근거로 합작기업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노사간 분쟁은 합작기업내에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勞動爭議調整委員會에 회부하며 만약 이 기구를 통해 해결이 안되거나 근로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法院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39)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op. cit.*, p. 135.

40) Baker & Mc.Kenzie, *op. cit.*, p. 23.

나. 勞動關聯 法律⁴¹⁾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인 종업원의 근로조건은 노동법 및 기타 관련법률 등 러시아 노동관련 법률을 통해 합작기업과 종업원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련의 노동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이 부문에서는 러시아연방의 법률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소연방 당시에도 러시아는 독자적 노동법을 갖고 있었고 각 공화국은 연방법률의 한계내에서 개별 勞動法을 갖게 되어 있었던 바 소련의 관련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勞動組合法(‘노동조합의 권리 및 보장’에 관한 소련법, 1990년 12월 10일 최고회의 결정) : 5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勞動組合 設立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 ① 법률을 제안할 권리
- ② 경영자의 고용계약 취소에 대한 동의권
- ③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 ④ 조합원의 사회적 권리를 유지할 권리
- ⑤ 고용 및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법률과 단체협약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리
- ⑥ 파업을 공표할 권리

(2) 雇傭原則(‘고용에 대한 소련 및 각 공화국의 법률 원칙’, 1991년 1월 15일 최고회의 결정) : 소련인 고용과 관련한 법적, 경제적 및 조직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勞使間의 雇傭關係에는 雇傭原則, 蘇聯 및 各 共和國의 勞動法 및 團體協約이 적용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雇傭原則은 소련에 상주하고 있는 外國人 및 無國籍者에게도 적용된다.

(3) 勞動爭議法(‘노동쟁의에 관한 법률’, 1991년 3월 11일) : 經營者

41) Kim & Chang 법률사무소, *op. cit.*, pp. 64~70.

는 勞動爭議調整委員會의 決定에 대해 勞動組合委員會나 人民法院에 異意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유한다. 그러나 동 법률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임금이나 경제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原資材 및 設備

가. 物資供給의 安定性 確保

외국인투자자는 企業設立契約 締結 以前에 이 부문과 관련된 문제의 명백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입할 제품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제품을 검토하고 豫想 物資供給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물자공급체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으며 여전히 중앙집중식 통제체계가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이 독자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製品生産에 필요한 物資를 조달하는 문제를 규정한 별도의 규칙이나 규정은 없다. 단지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2조는 주택 및 점포비용을 포함하여 러시아연방내에서 구입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비용을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24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수입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物資調達에 관해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蘇聯 內部の 物資不足이나 제품의 질이 낮은 점 등 물자조달 사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운영상 애로를 초래해 왔다.

소련 당시에는 국가의 物資供給計劃에 의거하여 확실한 物資調達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다.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부문이 정부가 설정한 投資 優先留置 부문일 경우에는 소련측 파트너나 소련측 파트너를 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자신들에

게 할당된 제품 중에서 합작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합작기업이 국가의 물자공급에 포함되어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소련측 파트너가 관련 부처에 물자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物資需給時期를 예상공급자들의 계획에 맞춰야 하며 특히 루블화로 物資貸金を 지불하는 경우는 해당물품의 공급년도 이전해 4월까지 공급주문을 해야 했다.⁴²⁾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안정적 물자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⁴³⁾

첫째, 몇몇 필수품은 자체 생산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합작기업의 업무영역에서 經營 및 財政의 多樣化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會社間 協力を 강화하기 위하여 水平協力を 강화하는 것이다. 물자생산에 소요될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連繫體制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소련내에서 부품이나 物資調達 능력이 있는 소련측 파트너를 모색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넷째, 商品去來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가공급 체계와는 상관없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상품거래소의 거래대상 품목은 원자재 및 부품에서부터 석유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상품거래소에서는 소련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거래되기도 하고 그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수준이기는 하나 많은 합작기업들이 이를 통해 원자재 및 기타 부품의 안정적 공급채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2)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op. cit.*, p. 134.

43) IMF, IBRD, EBRD, OECD, *op. cit.*, p. 134.

나. 供給價格과 物品資金 支給

供給源 이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항으로는 供給價格과 決濟手段이다. 소련의 각료회의 결정 제49호의 제26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기업에 물자를 공급하는 소련내 공급자는 國際市場價格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렴한 국내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이 국내공급자가 물품대금이나 서비스대금을 경화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급자들이 硬貨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실제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았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루블화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련 당시에도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변화된 국내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즉, 물품대금을 경화로 결제해야 하고 그 가격이 國際市場價格과 같은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에서 반입할 경우 關稅나 輸入稅를 면제해 주므로 국내에서 조달한 물자는 제품의 규격이나 질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제시장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편이 나은 점이 있다.

이로 인해 硬貨의 自給自足を 달성해야 하고 제품을 루블화로 판매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품판매는 루블화로 하고 생산을 위한 물품구입에는 외화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다. 상품거래소

Gossnab을 중심으로 한 國家物資流通體系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1990년 5월 19일에 최초로 모스크바 상품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거래소는 급

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1991년에는 소련 전체 상품 유통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⁴⁴⁾

상품거래소는 처음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포고령을 기초로 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1991년 4월에는 소련 각료회의가 상품거래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⁴⁵⁾ 최근에는 대외 교역 업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원래 국내시장의 물품거래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물자조달을 하는 것이 용이하여, 서방기업들이 商品去來所 株主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製品의 販賣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약을 기초로 러시아 연방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販賣條件, 價格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상품시장에서의 競爭 및 反獨占行爲 規制에 관한 러시아연방법(1991. 3. 23)과 對外交易 關聯 法律이나 規定들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활동자유화에 관한 포고령 등 수출입 업무의 관련 규정은 활발히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종전 계획경제체제 당시의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1991년 10월 2일 소연방 차원의 대외경제활동 자유화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러시아연방도 대외무역 자유화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以前의 企業設立 登錄義務 이외에 별도로 對外貿易의 許可 및 登錄義務와 같은 제도가 폐지되었다. 內需販賣와 관련해서는 루블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전히 판매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硬貨의

44) 유병호, 「사할린상품거래소」, 『IPECK 북방경제』, 1991년 11월호, p. 89.

45) Michael J. Bradshaw, *Siberia at a Time of Change : New Vistas for Western Investment*, EIU Special Report No. 2171, 1992, p. 102.

自給自足 원칙을 고려할 때 경화로 국내에 판매하든지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 內需市場 販賣

內需販賣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루블화로 판매해야 하는 점이다. 물론 일부 경화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1992년 11월 1일까지 소매 및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러시아내에서 경화로 물건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國家供給體系의 문제이다. 물론 國家供給體系가 붕괴되고 생산자의 國家調達 目標量도 점차 축소되어 생산기업의 自由販賣量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러한 국가공급 및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民營化나 價格自由化 등의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內需市場은 아직도 대부분이 국가통제하에 있으며⁴⁶⁾ 가격자유화 이후의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1) 舊蘇聯의 國內 物資流通 體系

聯邦關係會議令 제816호(1987. 7) '國家計劃에 관한 改革'에 따라 국가에서 할당하는 義務生産量이 줄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생산분야와 여타분야로 분리하여 국가경제에 영향이 적은 분야의 생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계획하도록 위임하였고 기업생산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상이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 ① 콘트롤 데이터(Control-Data): 구속력이 없으나 일정한 최소생산량을 제시한 것

46) Tass 3월 23일자가 러시아 통계위원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6%가 여전히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전체 생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IMF에 제출한 신경제정책에 따르면 '92년중에 건설자재 및 도매업과 유통업은 각각 50%, 60%가 민영화될 계획임.

- ② 노르마찌브(Normativy): 생산량 중 일정 퍼센트를 정하여 공급하는 것
- ③ 리미티(Limity): 공급 가능한 자원의 최대량을 정하는 것
- ④ 고스자까즈(Goszakazy): 국가주문에 근거한 의무생산

또 연방각료회의령 제818호(1987. 7) '物資, 技術調達에 관한 改革'을 통해서 물자공급을 中央統制下에 두는 방법과 都賣機能에 맡기는 방법으로 2원화하여 도매기능에 맡겨진 품목은 기업들간의 직접계약에 의해 물건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2) 合作企業의 內需市場 販賣

소련의 제도로는 國家物資技術調達委員會(Gossnab)령 74호(1987. 6. 4)에 의거하여 합작투자기업은 소재지의 Gossnab支社 또는 聯邦委員會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백화점, 각 공화국의 貿易部 傘下 都賣組織이나 새로 설립된 사기업차원의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합작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소련내 모든 기업 및 경제조직들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소련 경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國家物資技術調達委員會를 경유하여 유통시켜야 하며, 유통정보는 지방당국, 공화국 및 연방의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왔다.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및 反獨占行爲 規制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16조는 상품시장과 경쟁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同위원회는 적절한 관리기구로 하여금 경쟁을 촉구하고 상품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주어진 시장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용자 편의, 세 금감면 및 면제 등
- ② 자유가격 및 규제가격
- ③ 생산 및 유통의 이중구조(특히 국가의 자본을 활용하여)
- ④ 부족제품의 생산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 ⑤ 외국인투자 유치, 합작투자사 설립, 자유기업지대(FEZ) 창설
- ⑥ 수출입면허, 관세의 변경
- ⑦ 면허가 필요한 활동의 종류

나. 輸出市場에의 販賣

(1) 關聯法律과 主要內容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5조에 따르면 100%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은 자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면허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자사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산지표기등 국제적인 관행을 기준으로 러시아연방 각료회의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면허없이 수출할 권한을 100% 외국인 소유기업과 외국인투자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에 국한시킨 것으로 보아 여타 국내기업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면허제도를 수출세로 대체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 이 부문과 관련된 규정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수출업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對外經濟活動 자유화에 관한 대통령 布告令 213호('91. 1일자)⁴⁷⁾ : 대외경제 활동의 촉진, 국내시장의 안정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발표된 이 포고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외교역 관련 사항으로는 ① 회사형태와 상관없이(합작투자 포함) 러시아 연방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바터거래 등의 대외무역을 할 수 있고, ② 면허 및 쿼터의 적용대상 품목이 축소된 것 등이다.
-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제91호('91년 12월 31일 제정, '91년 4월 1일 개정)⁴⁸⁾ : 이 각의 결정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47) "Law on Foreign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in the USSR*, January 1992, p. 68 및 *Economika i Bizn*, No. 48, November 1991.

48)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Soviet News Agency Tass*, Special Issue 7, February 10, 1992, pp. 3-4.

는 일부 제품의 수출(바터거래 포함)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輸出稅 賦課權은 러시아 國家關稅委員會가 보유하며 重量에 따라 유럽화폐단위(ECU)를 적용한다. '92년 3월 同 결정의 별첨 서류에 명기된 수출세 부과품목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세율도 평균 25% 정도 下向調整되었으며 4월 1일자 改定案에는 輸出稅 算出 基準換率이 변경되고 輕化 의무매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수출세 추가 납부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되었다.⁴⁹⁾

- 상품(노동, 서비스)의 수출입 쿼터 및 면허 부여에 관한 러시아 정부 결정 제90호('91년 12월 31일)⁵⁰⁾ : 수출쿼터의 적용을 받는 상품목록 및 면허가 필요한 상품목록과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정부결정에서는 對外關係部 傘下 對外經濟關係委員會가 기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지침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決定 第1條에는 적용범위를 러시아연방과 舊蘇聯邦 構成 共和國과의 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節次에 관한 指針(同 決定 별첨 5)에서는 CIS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수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92년도 러시아연방 外換準備金 造成에 관한 大統領令 335호('91년 12월 30일)⁵¹⁾ : 外債償還과 국가에 중요한 物資 購入基金 및 루블화 安定基金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통해 획득한 모든 輕化 수익의 40%를 특별상업환율로 러시아연방 外換準備基金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2년 1월 22일에는 기업, 협회, 조직 및 개인이 러시아의 공화국 외환준비기금

49) *Eco-tass*, April 7, 1992.

50)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Soviet News Agency Tass*, Special Issue 5, February 3, 1992, pp. 6-16.

51)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Soviet News Agency Tass*, *op. cit.*, pp.

(Republican Foreign Currency Reserve)에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명시한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 제3호가 발표되었다.

(2) 輸出할 수 있는 권한의 取得

대외경제활동 자유화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213호를 통해 대외경제활동 등록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부에만 적용되었다. 즉 關稅事務所는 登錄書類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나 기업들이 交易代金決済을 위해 은행에 外換口座를 개설할 때는 여전히 등록서류가 필요하며 '91년 12월과 '92년 1월에 발표한 몇가지 규제문서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재도입된 인상을 준다.⁵²⁾

수출권과 관련하여 등록 이외에도 수출품이 면허(License)를 필요로 하는 제품(서비스)인지 여부와 쿼터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쿼터나 면허의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수출이 보장되며 政府決定을 통해서만 이를 규제할 수 있다.⁵³⁾

가) 수출면허(Export License)의 取得

면허가 필요한 품목은 심사주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러시아 정부가 事例別로 수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 귀금속, 핵물질, 원자재, 설비재 및 주요 Know-how 등 15개 품목이며, 둘째는 生態 및 天然資源部, 保健部 등 關聯部處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 쿼터적용

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第1部類는 생산자가 직접 쿼터를 割當받거나 對外關係部 傘下 대외경제관계위원회가 産業部, 燃料에너지部, 農業部 등 關聯부처로부터 쿼터를 할당받아 이를 再割當하는 石炭, 原油, 石油製品, 天然가스, 礬素 함유 원자재, 합성고무

52)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Local Presence in the Republic of Russia* (1992년 3월 31일~4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미나 자료), pp. 12-13.

53) Ibid., p. 14.

등이다. 第2部類는 대외관계부 산하 대외경제관계위원회가 競賣를 통해 쿼터를 매각하는 石油製品 混合物, 廢紙, 纖維 및 纖維製品⁵⁴⁾, 철 및 비철금속의 古鐵, 식물 및 동물에서 추출된 약원료 등이다.

한편 에너지제품 이외 품목에 대한 쿼터 및 면허제도는 1992년 7월 1일까지는 폐지되며 에너지제품에 대한 쿼터도 1993년말까지 폐지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수출면허의 發給 및 買入

면허 획득절차와 관련된 規定으로는 러시아 政府 決定 제90호(91년 12월 31일)의 별첨 5로 첨부된 '免許부여 및 쿼터 설정 절차에 관한 규칙'과 對外經濟關係部 長官令 제166호 '1992년도 수출쿼터 매각조치'가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수출면허 획득의 기초)와 輸出免許 申請書, 輸出契約書를 대외경제관계부 지방행정 관서에 제출하여 수출면허를 발급받게 되어 있다. 수출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통해서만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일단 수출면허를 획득하고 난 이후에는 매각할 수 없다. 수출증명서의 최초 매각가격은 비관세규제위원회(Non-Tariff Regulation Directorate), 교역감시위원회(Trade Inspection Directorate), 경제위원회(Economic Directorate) 및 기타 관련 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출증명서 소지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출면허는 수출증명서에 明記된 쿼터 한도내에서 발급되며 여러가지 상품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라도 이와 상관없이 개별 상품에 대해서 발급된다. 그러나 여러 상품이 TN-VED코드上 한가지 小分類에 해당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 일반 면허(General Licences)가 발급될 수 있다. 免許期間은 1년간 1회의 수출이 보장되는 '1회 면허'와 1년간 여러 번의

54) EEC와의 섬유류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정. 舊蘇聯 구성 공화국들간에 수출량이 할당되게 됨.

수출을 할 수 있는 1년 유효의 ‘一般면허’가 있다.

輸出證明書는 러시아인(법인, 자연인 포함)에게만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들은 이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경매에 참가하여 매입하거나 商品去來所에서 제품과 수출면허를 一括 購入하는 방식⁵⁵⁾이 있다.

(3) 輸出稅

가) 不安定한 수출세 관련 制度

러시아 정부는 수출세 관련 제도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를 자주 변경하고 있다. 당초 91년 11월 15일자 옐친 대통령의 ‘대의 경제활동 자유화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213호’ 草案에서는 모든 수출입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最終案에는 對外交易에 대해 광범위한 稅制를 유지하기로 되었다.⁵⁶⁾ 1991년 12월 31일자의 ‘수출세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채택 이후 1992년 1월 25일에는 대폭적인 수출세의 인하를 내용으로 한 ‘러시아연방 輸出稅率 변경에 관한 정부결정 제42호’가 채택되었다. 또 1992년 3월 1일에는 ‘관세율 변경에 관한 국가관세위원회 결정 제57호’가 채택되었으며 4월 1일자로 ‘수출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각의 결정 제91호’가 개정되었다.

한편, 치가노프(Tsyganov) 러시아 관세청 부국장은 3월 10일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을 변경함으로써 러시아연방 각의 결정 제91호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던 수출세율이 25% 정도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⁵⁷⁾ 아벤(Aven) 러시아연방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은 쿼터와 면허제도를 수출세로 대체하고 수출업자들이 경화수익을 마음대

55)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 39. 대외무역자유화 조치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방법으로 면허 매각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임.

56) *Ibid.*, p. 12.

57) *Tass*, March 10, 1992.

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출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⁵⁸⁾으로써 현재의 체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나) 적용대상 및 납부관련 제도

‘수출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각의 결정 제91호’는 일부 제품의 수출(바터거래 포함)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적용 稅率과 品目을 별첨 서류에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업자에 대해 부과되며 적용대상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課稅時點은 상품의 通關 以前이나 通關中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출세는 重量에 따라 ECU로 산출한 후 루블로 환산하여 납부한다. 그런데 수출세를 루블貨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의 변화로 인해 수출업자는 종전보다 60배 이상의 루블貨를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 제도(舊 蘇聯邦 수출세)하에서는 세금 납부시 달러당 1.8루블의 상업환율이 적용된 반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1ECU당 140루블의 시장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⁵⁹⁾ 환율적용 시점은 종전의 수출세 ‘납부시점’에서 改定案에는 ‘과세시점’의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시장환율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國境을 通過하는 時點’의 상업환율을 기준으로 수출세를 산정한다.

(4) 硬貨의 義務賣却

가) 適用對象

‘1992년도 러시아연방 경화준비금 조성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335호’(1991년 12월 30일)의 별첨 목록에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合作企業이나 외국인 100% 所有 子會社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의 出資 持分이 30% 미만인 경우는 경화의 의무매각 적

58) *Eco-tass*, April 6, 1992.

59)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 23.

용대상에 포함된다.⁶⁰⁾ 務賣却額 算出基礎는 경화소득 중에서 해외에서 지급한 運送費用, 保險費用 등 제반 비용을 控除하고 난 이후의 硬貨所得이다. 40%의 의무매각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상품

- 살아 있는 동물 · 동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 · 천연 식물원자재
- 식료품, 알콜 및 비알콜성 음료, 식초, 담배 및 유사대체품
- 광물 ·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
- 동물가죽, 모피 등의 원자재 및 이의 가공제품, 여행용제품, 가방
- 목재 및 목재가공품, 목탄, 코르크 및 코르크 가공제품
- 펄프用 목재, 펄프 및 휴지, 종이, 종이판 및 종이제품
- 천연 및 가공 진주, 가공 및 반가공 석재, 귀금속, 금속코팅과 관련된 기타 금속, 기타 관련제품, 보석류, 화폐
- 철 및 비철금속, 가공한 금속제품 · 무기 및 탄약류 (부품 및 장비 포함)

— 서비스

- 수송관련 서비스 · 보험 및 교역관련 화물운송 · 교역 및 은행업 무의 중개서비스 · 해외관광 및 문화부문의 서비스

나) 義務賣却의 規模

수출업자는 경화수익의 40%를 연방 외환준비금에 의무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조달한 外換을 舊蘇外債 償還에 사용할 계획이다. 수출업자는 러시아연방 외환준비금에 대한 의무매각규모 40% 중 2%를 러시아연방내 지방행정 단위에 매각할 수 있다. 한편 수출업자는 루블화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에도 10%를 매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二重的인 硬貨收入의 義務賣却制度로 인해 수

60) *Ibid.*, p. 28.

출입자는 수출세를 제외하고도 외환소득의 50%를 의무매각해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80% 이상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의 종류는 각각 다른데 수출세에는 1ECU당 140루블의 시장환율이, 연방 경화준비금에 대한 賣却時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特別商業換率⁶¹⁾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賣却時는 外換去來所의 외환거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되는 市場換率이 적용된다.

다) 義務賣却額의 輸出稅 納付額 控除

러시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경화소득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40%의 경화소득 의무매각액에서 그들이 납부한 수출세를 공제해 준다. 이의 還給額은 ECU로 납부한 수출세의 40%와 市場換率과 特別市場換率의 差額을 곱하여 산출한다.⁶²⁾ 그러나 의무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 외국인소유 지사나 외국인투자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과 같이 경화소득의 40% 의무매각 대상이 아닌 기업은 수출세의 30%⁶³⁾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61) 시장환율의 일정비율(현재는 시장환율의 50%임)로 설정되어 週 단위로 공시됨.

62) *Ibid.*, p. 23.

예를 들어 수출세가 30%인 제품을 100ECU만큼 수출한 경우, 수출세로 30ECU(적용환율은 市場換率인 1ECU當 140루블)를, 러시아연방 外換準備金에 대한 40%의 의무매각으로 40ECU(적용환율은 特別商業換率인 1ECU當 70루블)를,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10%의 義務賣却으로 10ECU(적용환율은 市場換率)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세 납부시 적용되는 '市場換率'과 러시아연방 외환준비금에 대한 의무매각시 적용되는 '特別商業換率'의 차이는 70루블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출세 납부액 30ECU의 40%인 12ECU와 두 가지 환율간의 차액을 곱한 금액, 즉 $12(\text{ECU}) \times 70 = 840$ 루블을 환급받게 된다.

63) 4월 1일자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15%를 30%로 인상함으로써 외환의 의무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도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환소득 사용 재량권이 종전보다 축소됨.

(5) 수출대금의 해외유출 통제체계

러시아연방 혹은 외국인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해외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과 관세사무소는 무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수출기업은 제품통관을 위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관리 보증서를 받아 관세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 은행은 만약 수출업자가 제품이나 물자를 수출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은행구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화폐관리 당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 이외에도 양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외화유출 통제업무를 하게 된다.

5. 租稅 關聯 制度

가. 關聯法律 및 制度改革 動向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外國人投資企業이나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課稅는 러시아 연방법률에 따른다고 규정(제28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地域 혹은 産業部門에 대한 課稅特惠事項 이외에는 러시아연방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1991년 10월 14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내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特性’에서 舊蘇聯法 및 기존 러시아법의 러시아연방내 適用節次를 정하여 1991년말까지 이를 限時的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91년 하반기에 광범위한 稅制改革 방안 검토에 착수하여 여러가지의 조세관련 법률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현재 알려진 조세관련 주요 법률로는 ‘러시아연방 租稅基本法’(1991년 12월 27일자), ‘러시아연방 企業 및 組織의 利潤稅法’(1991년 12월 27일자), ‘러시아연방 企業 및 조직의 소득세법’(1991년 12월 20일자), ‘러시아연방 기업재

산세법'(1991년 12월 13일자) 등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부가세법, 물품 판매세법 등이 있으나 '92년 2월말 현재 附加稅 및 物品販賣稅와 관련된 법만 공포·시행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의회도 독자적으로 18개의 조세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⁶⁴⁾

러시아정부가 私有財産制의 도입등 새로운 국가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폭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조세관련 법률의 기본방침은⁶⁵⁾ 여러 가지 세금의 新設과 行政單位間 稅金徵收權 및 使用權의 區分을 명확히 하여 地方當局의 權限을 擴大하는 것이며 기업관련 세금은 다소 완화되고 소비재, 식료품, 의약품, 軍需産業의 民需轉換設備, 석유 및 석탄산업 발전에 再投資된 利潤도 免稅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3월 6일 현재 러시아연방에서의 조세체계와 관련된 법률적 기초는 <표 2>와 같다.⁶⁶⁾

나. 기업관련 주요 조세제도

(1) 所得稅(Income Tax) : 러시아 최고회의가 정부의 '利潤稅' 도입안에 대응하여 제안한 것으로 國營企業의 지나친 賃金引上을 억제하기 위해 利潤과 賃金을 합한 금액에 대해 所得稅를 부과하지는 내용으로 利潤稅法과 함께 승인되었다. 소득세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2/4분기중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1/4분기 동안은 利潤稅法이 유효하다.⁶⁷⁾

64) Business International, *op. cit.*, p. 933.

65) *Eco-Tass*, March 5, 1992

66)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Special Report : Taxation in Russian Federation*, March 1992, p. 93.

67)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Soviet Business Bulletin*, Vol. 1 No. 1, January 1992, p. 70.

한편 IMF의 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며 이의 검토가 무기한 연장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음.

〈표 2〉 러시아연방 조세관련 법률제정 현황

세 금 명	관련법률 존재여부	관련세칙 존재여부
연 방 세		
부 가 세	채 택	공 표
소비세(물품세)	“	“
소 득 세	“	미완성
이 윤 세	“	“
은행 소득세	“	“
보험업무에 관한 과세	“	“
증 개 세	초안 마련 안됨	“
국가연금 기금세 (사회보장국가 기금세)	채 택	구세칙 존재
고용세 국가기금	채 택	미완성
개인 소득세	“	러시아 세금 납부 (1992. 1. 30자)
증권거래세	“	미완성
투 자 세	“	“
천연자원 이용료	“	“
고속도로기금 기부금	“	법률에 관련체계가 설명됨
국가관세	“	“
유산/증여세	“	“
인 지 세	미완성	미완성
공화국세		
재산세(기업)	채 택	“
산 림 세	초안 미완성	“
공업기업이 사용한 물사용료	초안 미완성	“
지 방 세		
자산세(자연인)	채 택	법률에 관련 체계가 설명됨
재개발지역의 공업건설세	초안 미완성	미완성
관 광 세	채 택	법률에 관련 체계가 설명됨
토 지 세	“	미완성
교 역 세	초안 미완성	“
기업활동을 하는 자연인 등록세	채 택	법률에 관련 체계가 설명됨

한편 러시아정부는 소득세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賃金を 과세대상 기준액에서 제외하는 利潤稅의 일부요소를 도입하여 일정한도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만 稅金算定 基礎額에서 控除하고 향후 賃金の 過多引上 現象이 발생할 경우 過多賃金 防止를 위한 稅金을 도입할 계획이다.

러시아연방내 외국법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표사무소가 있는 지방의 聯邦租稅 當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회피범으로 간주된다. 러시아연방 조세관련 기본법 제22조는 법인의 소득세 납부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된 재산세, 관세 및 기타 모든 세금이 징수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방세가 징수된 후, 동일세의 재부과시에는 징수된 세액만큼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銀行, 金融機關, 保險業務를 하는 기업, 農業生産에 종사하는 기업 등은 所得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는 기업의 순익 즉 생산비용을 공제하고 부가세(VAT), 판매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18.0% 및 6.0%이다.(표 3 참조)

(2) 利潤稅(Profit tax) : 서방국가의 법인세(Corporate Tax)를 모델로 하여 제정된 세금으로 外國人投資企業에도 러시아 國內法人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연방내 모든 기업 및 조직이나 영업활동을 하는 기타 형태의 사무소 중 천연자원 개발 및 원자재가공, 건설 등 러시아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 등은 이윤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윤세 납부를 위해 외국법인은 대표사무소 관할 공화국 조세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利潤稅의 適用對象은 러시아내 법인자격을 지닌 기업 및 조직이나 법인자격을 없으나 기업, 조직의 支社 혹은 독자적인 부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조직으로서 러시아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 등이다. 은행, 금융기관, 보험업무 수행기업 등은 이윤 일부에 대한 이윤세가 면제된다. 세율은 6.0%, 13.0% 및 20.0%이다.

과세대상 소득의 산정기초는 순 이윤 즉 상품 판매로 얻은 이윤(손실) 총계이며 기업의 경화소득은 루블소득과 합산하게 되는데 소득 발

생시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루블화로 환산한다. 러시아연방 조세관련 기본법 제22조는 “이윤세는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4배를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⁶⁸⁾ 외국인 100% 소유 기업에 대한 세율은 32%이다.

(3) 附加價值稅(VAT) : 러시아정부가 91년 12월 16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매가격에 400~500% 정도 포함되어 있던 賣出稅(Turnover Tax)와 販賣稅(Sales Tax)를 대체하여 제정한 세금이다.⁶⁹⁾ 러시아연방내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에너지, 통신관련 제품, 화물수송 등 정부의 가격규제를 받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CIS域外國家로 輸出되는 製品이나 서비스, 수송, 輸出製品의 荷役 및 再船籍, 러시아를 경유하는 他國의 輸出製品, 外交官 및 그 家族의 公式的 使用 目的의 物品이나 서비스, 市 운송 서비스(택시제외), 집 賃借 등 15개 項目에 대해서는 附加價值稅가 면제된다. CIS 역내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원산지에서 부과되며 同 법령 제 13조 1항에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 부가세는 상품 販賣價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화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부가세금액을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설정 환율로 매각해야 한다.

세율도 28%, 혹은 21.28%가 적용되나 러시아연방 최고회의가 부가세를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⁷¹⁾함에 따라 식료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物品販賣稅(Excise Duty) : 일정한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 부과된다. 알코올, 담배, 자동차, 기타 사치품에 대해

68)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op. cit.*, p. 72.

69) FBIS, *Daily Report*, December 9, 1991, pp. 34-35.

70) Consulting Service Internaitonal Ltd., *op. cit.*, p. 5.

71) *Tass*, February 8, 1992.

14~90%가 부과되며 판매 도매가의 일부분으로 물품판매세가 포함된다.

물품판매세는 企業이 自體生産한 製品의 販賣總額에 대해 부과되며 CIS國家로 輸出하는 경우에도 賦課된다. 그러나 CIS域外輸出 및 輸入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생산한 기업이 아니고 仲介商 役割을 한 경우에는 國家關稅事務所에 輸出 完了 사실을 보고하여야만 販賣稅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⁷²⁾ 이 물품판매세 총계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기초에 포함된다.

(5) 企業財産稅 : 지방세로서 독자적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단위로 부과된다. 純資産에서 減價償却, 短期 固定資産, 融資金을 공제하고 난 이후 과세되며 기업재산세법 제2조는 貸借對照表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法人稅 : 외국법인의 경우, 配當金, 利益, 著作權, 特許權, 賃貸料 등 소련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

6. 會計 關聯 制度⁷³⁾

가. 관련규정

합작기업의 회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련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蘇聯財務部 및 國家統計委員會의 몇가지 指針 즉 1987년 2월 27일자 '合

72)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op. cit.*, p. 13.

73) 회계제도와 관련된 법률이나 포고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Business International 주최로 6월 16~18일에 런던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Business International 모스크바 사무소 부소장인 James Nail은 '92년 5월에 재무부의 지침(Instruction)이 발표되었다고 말할.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련의 관련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3〉 주요 세금 및 세율

(단위 : %)

세금종류	부 과 대 상	세 율	
부가가치세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 판매 · 연료· 전력 컴플렉스의 생산제품 판매 · 국가가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산업서비스	28.0	
	· VAT를 포함한 국가규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소매, 공공 요식업, 경매, 중개행위)	21.88	
물품판매세		10.0~90.0	
소득세	일반율	18.0	
	회계 및 자문서비스	25.0	
	중개행위, 교역중개행위, 브로커사무소 및 투자자문기관	45.0	
	비디오대여, 연극, 카지노, 현금거래, 스포트머신	70.0	
	외국 : 비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법인 : 수송 부문의 소득	18.0 6.0	
이윤세	일반율	32.0	
	증권거래소 및 투자기관	45.0	
	배당금, 다른 기업의 채권으로부터 얻은 이윤 (정부채권 기타 국제로부터의 소득은 제외)	15.0	
	러시아내 다른 기업의 주식참여로 얻은 소득	15.0	
	비디오대여, 연극, 카지노, 스포트머신으로부터의 소득	70.0	
	객석이 2,000개 이상인 공개 연주장에서의 음악경연 소득	50.0	
	외국 법인	배당금, 다른 기업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 러시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투자자로 얻은 소득	15.0
		저작권, 특허, 임대 및 기타 러시아내에서 얻은 소득(운송 제외)	20.0
수송부문의 소득		6.0	
기업재산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총계를 제외한 재산	0.5	

資料 :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op. cit.*

作企業, 國際企業 및 組織의 會計 및 記帳'에 관한 國家統計委員會 指針 제53호, 1988년 5월 3일자 소련재무부 및 국가통계 위원회의 '合作企業, 國際組織 및 협회의 내부 및 外部會計節次的 改定'에 관한 指針과 1989년 8월 9일, 1990년 6월 6일자 규칙 제74호 '合作投資企業의 個別的인 財務運營'이 制定·運營되어 왔다.⁷⁴⁾

소련의 합작투자법이었던 각료회의 결정 제49호 제45조와 1987년 2월 27일자 소연방 재무성 지침 제2조에서는 합작기업이 소련의 국영기업과 같은 標準會計 방식에 따라 帳簿記帳, 기타 財務資料의 作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제도도 합작투자관련 규칙들이 제정됨에 따라 초기의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1988년 12월 2일자 결의 제1405호는 "合作投資 會社の 財政 및 經濟活動에 대한 會計는 당사자들의 相互合意에 따라 이행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 비록 합작투자기업이 소련 회계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련 측 투자자는 이 문제의 협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회계에 관련된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소련 재무부도 소련의 회계규정을 보충하고 이와 상반되지 않는 한 非소련적 회계규정을 가진 합작투자 계약의 등록을 허가해 왔으며 이러한 실정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代案을 규정해 두는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⁷⁵⁾

첫째, 會計帳簿는 합작투자자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합의한 特別規定에 따라 작성·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蘇聯의 會計規則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會計帳簿를 작성·유지되도록 하되 特定國家에서 一般的으로 許容되는 會計規則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分期別 經營報告書 또는 月別 經營報告書와 같은 追加的 財務諸表를 작성해야 한다.

74) Baker & McKenzie, *op. cit.*, p. 30.

75) Kim & Chang 법률사무소, *op. cit.*, pp. 14~16.

회계규칙의 협상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어떤 규칙이 配當目的의 利益計算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련의 會計規定이 租稅와 報告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이익계산시 필수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配當目的의 利益計算時에는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한가지 또 다른 중요사항은 減價償却의 適用方法이 설립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련 國營會社의 規定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합작기업(예를 들어 이사회 또는 재무담당 매니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기본법 제30조는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會計帳簿 記錄 및 會計業務는 러시아연방의 會計規則 혹은 외국인투자자 本國의 會計規則에 따라 遂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련 會計規則의 特性和 監査

서구의 회계제도와 소련의 회계제도간에 존재하는 많은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 합작투자회사의 성공적인 운영 관건이다. 그러므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여 투자자간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蘇聯의 會計原理나 慣行이 西方과 다른 이유는 會計關聯 情報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西方의 會計原理는 기업의 一般的 財政成果나 利潤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蘇聯에서 會計原理는 國家計劃에 필요한 統計를 提供하는 手段일 뿐 惡性 負債, 研究開發費, 寄附金, 接待費 등과 같은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⁷⁶⁾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뀔 것으로 보인다.

76) Baker & McKenzie, *op. cit.*, p. 31.

소련회계 규칙이 서방과 실질적으로 다른 차이는 소련의 會計制度는 엄격한 會計年度 基準(calander based)이며 移延 計定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⁷⁷⁾ 또 다른 점은 減價償却 期間이 非現實的으로 길어 稅制上의 不利益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작기업 고유의 감가상각 규정을 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타당성조사 수행시 합작기업에 적용될 會計原理에 따라 財務分析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소련의 會計原理가 合作企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利潤의 算定方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① 자기나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西方의 財務 및 會計分析 原理에 따라 합작기업의 財務分析表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② 內部監督 및 監査節次를 設立文書에 명기하거나 理事會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련은 합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외국어로 별도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작기업의 영업, 재무활동에 대한 감사는 합법적 권한을 가진 蘇聯 會計監査組織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990년 중반까지 소련의 합작사인 Inaudit社만 합작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합작투자 회사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소련회사가 이런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naudit社의 업무는 合作企業의 財務諸表가 蘇聯法과 會計原理에 일치하는지를 감사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추가로 돈을 지불하면 Inaudit社는 서방의 회계원리에 따라 합작기업의 회계업무를 분석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합작기업들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외국계회사를 선호하는데 소련법도 이를 허용하기는 하나 소련법 아래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帳簿는 루블貨로 記載한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30조는 경화

77)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op. cit.*, p. 134.

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러시아 中央銀行이 對外經濟 活動에 적용하기 위해 設定한 換率을 적용하여 外貨를 盧布貨로 換算하여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換率適用 時點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소련의 제도에서는 去來當日의 고스방크가 정한 商業換率이 적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합작기업은 외화거래에 반영하기 위해 외화단위의 회계장부를 만들수 있으며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장부를 병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가. 투자보호 관련 규정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장은 외국인투자의 법적 지위 및 보상규정 등 투자보장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同 法律, 기타 法律 및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國際協約에 의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국내법률보다 우선한다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韓·蘇間에 체결된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러시아가 승계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러시아연방의 외국인 투자보호 관련 규정으로는 제1장에서 설명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들이 있다.

외국인투자 보장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은 몇가지 예외나 독창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소련 법률과 유사하다. 즉,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행정당국의 제반 불법행위나 強制沒收에 대한 補償措置를 두고 있고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裁判 및 仲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법률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보장의 불안정성이 있다. 구소련의 외국인투자기본법(1991년 7월 5일자)은 법규변경으로부터의 보호 조항(법률 제9조)에서 “만일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가 이후에 개정되어 투자조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투자시점에서 효력이 있던 법규를 향후 10년간 적용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 기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크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시 보호 조항을 삽입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데니센코

(Denisenko) 러시아연방 經濟部 外國人投資委員會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⁷⁸⁾ 외국인투자기업 登錄이후 불리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후 10년간 登錄當時의 법률이 적용되며 特惠措置도 같은 기간 적용되지만 稅制 및 反獨占措置는 그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한다.

한편 韓·蘇간에 締結된 ‘投資의 增進 및 投資保護에 관한 協定’ 제14조 ③항에는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동안 행하여진 투자에 대해서 이 협정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投資保護 對象 및 補償

保護對象은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투자 및 기타 同法 제1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연방 外國人投資法 제7조와 제8조는 強制沒收의 禁止 및 이에 대한 補償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有化, 國家徵發, 沒收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國有化 決定은 러시아 最高會議가 담당하며 沒收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또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연방 國家機關이나 公務員에 의한 不法의 措置나 무책임한 업무수행으로 야기된 손해, 期待利潤 喪失 등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한·소간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는 한국기업이 소련 영토내에서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原狀回復, 賠償, 補償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 혹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補償은 國有化나 沒收計劃을 公式的으로 發表한

78)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Itar-Tass News Agency*, May 11, 1992, p. 5.

時點에 國有化되거나 沒收된 實際費用에 相應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正當한 이유없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보상은 투자가 이루어진 晝폐나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外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을 지불할 때까지 러시아연방 現行 利率에 의한 이자도 보상되어야 하며 기대이윤의 喪失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한·소간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제5조도 收用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強化하여 規定하고 있다. 즉, 보상은 收用直前 또는 收用이 臨迫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이전의 投資의 實質價値에 相當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일로부터 지불일까지의 尙業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고 有效하게 現金化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送金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國家행정기구의 收用 결정에 대해 外國인투자자는 러시아연방 법원에 提訴할 수 있다.

다. 紛爭解決

러시아가 일방 당사자인 國際協約에 다른 사항이 있거나 設立文書에 다른 規定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外國인투자와 관련된 紛爭解決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最高仲裁裁判所가 담당한다. 러시아연방 外國인투자법 제8조는 補償節次, 規模 및 條件 등 投資와 關聯된 紛爭은 러시아 最高仲裁裁判所가 管轄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外國인투자자와 여타 外國인 투자기업, 러시아연방의 國家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러시아연방 내 法人체와의 紛爭이나 外國인투자기업에 지분을 출자한 자와 이 기업 간의 紛爭은 러시아연방 법원이 管轄하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仲裁재판소나 법에 規定된 紛爭 해결기구가 담당한다.

이러한 規定은 소련의 1991년 7월 5일자 合資투자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紛爭해결 절차를 規定한 것이다. 연방 각료회의결정 제49호는 합작기업의 紛爭을 소련법원이나 仲裁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활동 및 조직과의 關係, 設립문서의 해석등을 포함하

는 외국기업의 내부 문제등은 다른 나라의 실질적인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의 선택과 이를 통한 분쟁해결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설립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했다.⁷⁹⁾ 어떤 경우에라도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합작기업 설립문서는 紛爭解決 體系와 仲裁가 필요한 사항의 發生에 관한 規定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한·소간에 체결된 투자보장 협정 제9조(一方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따르면 일방 締約當事國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間的 어떠한 분쟁도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보상, 제5조에 따른 收用行爲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타 문제, 제6조의 不履行 또는 그릇된 履行의 결과에 관한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本條 제2항에도 不拘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同 분쟁은 1976년 12월 15일 國際聯合總會決議 31/98로 採擇된 국제협약 國際商去來法委員會 仲裁規則에 따라 해결된다.

이러한 한·소간 투자보장 협정이 아니더라도 구소련 당국도 합작파트너간의 분쟁을 중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기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해 왔으므로 러시아연방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합작파트너들은 UNCITRAL 혹은 ICC 仲裁規則에 따른 仲裁節次에 합의할 수도 있다.

79) Baker & McKenzie, *op. cit.*, p. 45 및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JVs, Acquisition and Privatization in EE and USSR*, p. 136.

라. 果實送金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0조는 외국인투자자가 세금이나 기타 수료를 지불하고 난 이후, 아래 경우에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 ① 투자결과 얻은 利潤, 配當金, 利子, 特許料 및 커미션, 技術援助 및 技術諮問料나 기타 보상
- ② 거래관계의 契約書나 現金去來를 수반하는 諸般 去來로 받은 금액
- ③ 投資分の 賣却이나 기업 전체를 清算한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몫으로 배당받은 금액
- ④ 同法 제8조에 규정된 보상

한편 韓·蘇間 投資保障協定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에는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⁸⁰⁾
- ②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매각하거나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清算하여 얻은 수익
- ③ 투자와 관련된 債務의 辨濟資金
- ④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얻은 타방 締約當事國 국민의 소득

그러나 제10조에는 上記관련 代金支給이 硬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루블화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外換交換이 엄격히 규제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크다. 한·소간 투자보장 협정 제6조 2항에는 이 경우 러시아연방 外換管理規定에 따라 送金 當日の 換率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화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된 또다른 규정으로는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1조와 제26조를 들 수 있다. 제26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

80) 同 협정 제1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수익은 투자를 통해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특히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

의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된 硬貨支出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한 硬貨利潤이나 러시아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한 경화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종전의 硬貨自體調達原則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제11조는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免許를 획득하여 개설한 루블화 銀行計座를 활용하여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러시아 對外經濟關係部, 러시아연방 閣僚會議, 러시아내 각 共和國 閣僚會議로부터 免許를 획득한 기업은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연방이나 연방내 공화국의 外換準備基金을 사용하여 對外經濟關係銀行이 설정한 한도내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라 루블화로 획득한 利潤을 硬貨로 바꿀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듯 러시아연방의 법률은 外換送金에 다소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하나 한·소간 투자보장 관련 협정은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므로 국제협약이 우선하도록 규정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연방 外換管理規定에 따라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換率이 문제가 된다. 러시아에는 종전의 3가지 換率⁸¹⁾이 더욱 복잡해져 5~6개의 換率⁸¹⁾이 있으며 이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환율로는 '政府市場換率', '特別商業換率', '自由市場換率 혹은 銀行間 非現金 去來 換率', '現金去來 自由市場換率' 등이 있으나 정부시장 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경화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든지 아니면 수출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합작기업의 경

81) Business Interational, *Trade, Investment and Local Presence in the Republic of Russia*, *op. cit.*, pp. 27~28. 소위 달러당 8~10루블의 투자환율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는 자체조달한 收益 중 硬貨는 외국인 몫으로 送金하고 난 이후에 이윤을 재분배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도 外貨收益이 過失送金額에 못미칠 때에는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이 '92년 8월부터 루블화의 兌換化 方針을 밝히고 있어 과실송금액을 위한 경화확보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 優待措置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一般的 優待措置와 經濟特區(혹은 자유경제지역)에 대한 優待措置로 크게 구별된다. 종전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주어졌던 세계상 우대조치가 일부분은 소멸되는 등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본격화와 함께 일부 우대조치가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

가. 一般的 優待措置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優待措置는 소련 당시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확대 및 외국인투자법 개정의사가 일부 관리들에 의해 발표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우대조치는 交易關聯 優待措置 및 稅制上的 優待措置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4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製品生産을 위해 수입하는 자산에 대한 關稅와 輸入稅를 免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同法 제25조는 외국인 100% 出資企業 및 法定資本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의 경우는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社 사용목적을 위해서는 면허없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自社 生産製品을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稅制上 優待措置 측면에서는 소련 당시와 같은 구체적 우대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분이 30%를 초과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利潤發生 이후 2년간 免稅惠澤이 주어지고 세율도 국내기업보다 낮았다.⁸²⁾ 그러나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28조에 重點開發對象인 主要經濟部門이나 奧地에 대한 투자기업의 경우 稅制上의 特惠를 부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러한 혜택이 稅制上에 반영된 흔적은 없다.⁸³⁾

러시아연방도 당초에는 舊蘇聯 당시와 같은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토단계의 러시아연방의 外國人投資法 草案에 따르면 優先部門에 대해서는 5년간의 免稅期間이 주어지며 이후 5년간은 60%의 稅金減免 惠澤을 받을 수 있었다.⁸⁴⁾ 그외 50만 달러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한 경우나 외국인 투자지분이 20%를 초과한 합작기업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 동안 利潤稅에서 20%를 輕減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또 외국인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 투자지분이 30%를 초과하는 합작기업은 처음 2년 동안은 이윤세의 20%를 경감해 주고 이후 5년간은 4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법률에서 이러한 稅制上의 特惠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硬貨使用의 裁量權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⁸⁵⁾ 수출을 통해 얻은

82) 소련의 세계상 우대조치와 관련하여서는 IMF, IBRD, EBRD, OECD, *op. cit.*, pp. 88~89 및 Baker & McKenzie, *op. cit.*, pp. 41~42 참고.

83) 러시아연방의 세계상 우대사항과 관련하여서는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Ltd., *Soviet Business Intelligence Bulletin : Taxation in Russian Federation*, 1992. pp. 21~28 및 pp. 28~40 참고.

84)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2105, *JVs, Acquisition and Privatization in EE and USSR*, pp. 131~132 및 유병호, 「소련의 합작투자제도」, 『IPECK 북방경제』 7월호(p. 24)에 따르면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제도, 정밀가공, 포장, 의약 및 식품, 통신, 관광,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이 세계상 우대혜택을 받는 우선투자유치 부문으로 러시아연방 법에 규정되어 있었음.

硬貨收益의 40% 매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던 외국인 100% 소유기업 및 외국인 투자지분이 30%를 초과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세 추가 납부율이 15%에서 30%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장경제체제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측면에서는 구소련 당시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나. 經濟特區(FEZ : Free Economic Zone)의 優待措置

구소련 당시 러시아연방은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발전을 위해 11개 자유경제지역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⁸⁵⁾

러시아정부의 이러한 試圖은 限定된 地域에서 새로운 經濟體制와 市場經濟體制의 인센티브를 실험하려는 것이었는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행한 이후에도 제반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화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제41조와 42조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에 따르면 外國資本, 海外先進技術, 經營技法의 도입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輸出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自由經濟地域을 설립하였으며 同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여타 지역과 다른 優待體系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

85) 이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제4장 4절 '製品의 販賣'를 참고.

86) UNDP, *Vladivostok : Pre-Investment Study for Free Economic Zone in Primorsky Region*, 1991, p. 14. 및 『소련동구권 정보 (MARK통신)』 제23호(91년 9월 15일자). 11개 FEZ는 서부지역, 시베리아지역 및 극동지역 등 3개의 대 권역으로 구분된다. 유럽과 인접한 서부지역에는 서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의 투자유치 및 교역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칼리닌그라드, 브이보르그, 샹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켈레노그라드 등 5개 FEZ가 있으며 시베리아 지역에는 알타이, 케메로보 등 2개, 또극동지역에는 치타, 사할린, 프리모르스키 등 4개 FEZ가 있음.

다. 제42조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활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追加的인 特權은 아래와 같다.

- 外國人投資企業 登錄節次의 單純化 : 외국인 투자규모가 7,500만 루블까지는 당국이 즉각 등록을 해야 한다.
- 稅制優待 :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로 송금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세율은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러시아연방법이 설정한 세율의 50%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
- 土地 및 其他 天然資源 이용에 대한 낮은 이용료 : 70년까지의 임차권 및 재임대 권리
- 特別關稅體系 : 낮은 輸出入 關稅率 적용 및 國境通過 節次의 簡素化
- 외국인의 출입국시 비자면제 등 간편한 절차

또한 同 지역에서는 상당부문의 權限이 地方行政單位로 移管되어 행정절차상의 복잡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보이지 않는 우대조치라 할 수 있다. 주요 지역별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⁸⁷⁾

(1) 상트 페테르부르크 경제특구⁸⁸⁾

- 硬貨義務賣却 : 외환관리 규정과 상관없이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외화획득액의 30% 이내에서만 은행매입을 의무화
- 蘇聯企業이나 외국인기업 모두에게 달러 등의 외화로 경비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종업원들에게 외화보유를 허용함.

87) 각종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일부는 계획단계의 내용도 있으므로 정확한 실시 내용은 확인해야 함.

88) 『일간무역』, '91년 9월 5일자. 『소련동구권정보(MARK통신)』, '91년 7월 1일자, p. 5.

- 외국인과 합작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하고 州政府등 上級官廳의 許可對象에서 제외
- 輸出入稅를 완전 免除
- 法人稅 상한선으로 내국기업은 30%, 외국기업은 20%를 적용
- 외국기업은 영업개시후 3년간 法人稅와 配當稅등을 면제
- 기타 행정지원 :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자유로운 여행과 거주를 허용하며 모든 외국기업은 소련국내의 企業會計處理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會計處理 原則에 따르도록 허용

(2) 사할린 경제특구(SFEZ)⁸⁹⁾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70년간의 장기 土地賃貸
- 輸出入關聯 : 蘇聯邦經濟權과 SFEZ간의 상품이동은 면세이며 천연 자원 수출을 제외 하고 이 지역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상품은 수입규제나 쿼터의 대상에서 제외.
- 租稅關聯 : 외국인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농업부문에서 획득한 이윤이나 건축자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얻은 이윤은 이윤발생 후 5년간 이윤세가 완전히 면제되며 지방행정기관이 발매한 債券이나 다른 주식을 통해 얻은 配當金에 대해서도 세금면제.
- 會計制度關聯 : 건물, 공장, 설비, 수송수단 등의 고정자산에 대해 加速減價償却率(1년당 20%까지) 적용을 허용.
- 기타 일반적 우대조치
 - 저렴한 공공서비스료, 輸送關稅惠澤뿐 아니라 稅金減免, 土地나 動産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권
 - 사할린 地域執行委員會가 러시아연방 財務部와의 합의하에 허가할 경우 지역내부의 상품거래나 서비스제공의 결제수단으로 硬貨

89) *Eco-tass*, December 7, 1991.

를 사용할 수 있음.

(3) 나호트카 지역⁹⁰⁾

- FEZ내 토지를 70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음.
- 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반출은 러시아연방 각료회의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쿼터할당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
- 定款資本에 대한 外國人 出資持分이 30% 이상인 경우 국가예산에 편입되는 利潤稅 및 過失送金稅는 7%이며 최근 이윤발생후 5년까지 이윤세 및 過失送金稅 免除
- 나호트카 FEZ내의 사회복지나 사회간접시설에 再投資된 이윤에 대해서는 免稅
- 수출입 상품 및 資産에 대한 關稅免除

(4) 기타⁹¹⁾

케메로보지역의 FEZ는 임금의 경화지급 보장 및 임금초과세제(Wages Tariff System)의 적용을 면제

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1-20,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1991. 12, pp. 216~217.

91) *Russia Express* No. 63, September 30, 1991, p.6.

「소련동구권정보(MARK 통신)」 제21호, 91년 9월 15일자, pp. 27~31.

VI. 結論 및 示唆点

1. 불안정한 法律環境

러시아연방의 外國人投資 관련 制度의 첫번째 특징으로는 經濟體制 轉換期의 법률적 불안정성과 입법미비를 들 수 있다. 소련의 붕괴와 獨立國家聯合의 결성이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舊蘇聯邦 구성국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새로운 政治· 經濟的 환경에 맞도록 기존 制度의 전면적 재 검토와 법률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市場經濟體制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은 단기간내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國內의 어려운 정치· 경제사정으로 인해 채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되어 있어서 입법적 미비는 여전하다. 또한 새로 도입한 제도도 초기의 시행착오로 인해 몇개월이 못되어 이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러시아연방의 법률정비 작업 진행상황을 살펴 보면 外國人投資基本法의 채택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것도 현재 改正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改正案이 나올 전망이다. 그외 외국인투자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작업은 輸出入體系 등 對外經濟活動 부문과 租稅制度 관련 부문 등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輸出稅를 도입한 이후 3개월도 못되어 稅率과 적용 대상 품목이 변화되었으며 쿼터 및 免許制度도 수출세로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정부와 最高회의간의 의견대립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所得稅와 利潤稅가 모두 승인되어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最高회의의 통과 이후에도 실제로 公布· 發效된 것은 몇 개에 불과하고 차후에 '92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會計, 企業運營 및 勞動과 關聯된 러시아연방의 독자적 制度整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소련 당시의 제도가 여전히 적

용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이 바뀔 전망이다. 유의할 점은 러시아 연방의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구소련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러시아는 하부규정인 시행지침 등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문제는 종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 設立文書의 중요성 :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중요

外國人投資企業의 運營環境을 결정하는 요소는 法律에 규정된 制度의에 合作파트너간의 協商結果로 작성되는 設立文書상의 규정이 실질적인 운영에서 優先視된다. 설립문서상의 규정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항은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慣行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設立文書에 規定된 내용이 일반적인 여타 關聯法規보다 우선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會計規則과 紛爭解決 節次 등을 들 수 있다. 合作企業은 蘇聯會計規則의 適用을 받도록 한 제도상의 규정과는 달리 合作파트너간에 비소련적 會計規則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적으로 承認해 왔기 때문이다. 또 지나치게 길게 되어 있는 국영기업의 減價償却期間도 合作企業의 경우 設立文書에 이를 달리 규정할 경우 設立文書에 規定된 期間이 적용된다. 또 合作기업의 紛爭解決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사항 발생사유등을 설립문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러시아 仲裁裁判所 혹은 러시아 法院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合作파트너간에 제3국의 중재재판소나 기타 분쟁해결 국제기구등을 통한 분쟁해결에 합의하고 이를 設立文書에 明記하는 경우 설립문서상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기업운영과 관련한 議事決定時에 滿場一致가 필요한 사항도 반드시 定款에 포함되어 있어야 구속력을 가지며 경영권의 범위등도 정관에 규

정된 내용이 우선한다.

이와 같이 합작파트너간의 합의사항이 우선시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 이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外貨出資分을 루블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외국측 파트너의 외화출자분을 루블화로 換算할 때에는 蘇聯 對外經濟銀行이 설정한 商業換率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協商結果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換率이 적용되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들은 對러시아 進出과 관련한 제도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設立文書에 다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迂廻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련측 파트너와 設立文書에 관해 協商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투자동기가 現地の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IPECK이 '91년 5월에 주요 對蘇投資企業 및 투자희망기업을 對象으로 실시한 對蘇投資要因 및 隘路사항에 관한 實查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소련 현지의 값싼 原資材 活用과 방대한 蘇聯市場進出의 據點確保를 위해 對蘇投資를 검토 혹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動機에 의한 對蘇投資는 短期的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소기의 投資目的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原資材 調達과 관련한 문제점은 國家供給體系로부터의 排除와 供給者들이 物品貸金を 硬貨로 支拂할 것을 요구하는 점이다. 물론 國家供給體系는 崩壞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短期的으로는 여전히 內需市場의 주된 供給者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원자재 공급자는 合作企業과 供給契約을 체결할 때 國際市場 價格을 基準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規定되어 있고, 價格自由化 이후 國內價格도 상당한 水準으로 上昇한 바 低廉한 原資材 價格이라는 誘引要素는 줄어들었다. 또 소련의 供給者들은 物品貸金を 루블화 대신 硬貨로 要求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입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合作企業은 製品生産을 위해 원자재난 물자를 수입할 경우 輸入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關稅나 輸入稅를 免除해 주도록 規定하고 있어 수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적은 편이다. 그런데 原資材나 部品の 品質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國際市場에서 調達하는 편이 나은 면이 있다. 즉 內需市場으로부터의 값싼 原資材 조달은 훨씬 深度 있는 調査가 필요한 실정이다.

방대한 內需市場이라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不安定한 상태인 루블화로 판매해야 하므로 短期的으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더구나 原資材購入에 지속적으로 硬貨가 投入되어야 하고 硬貨의 自給自足を 原則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루블화 판매는 硬貨資金 運用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경우 內需市場 進出과 適切한 原資材 購入資金의 확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困境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物品을 硬貨로 販賣하거나 海外販賣市場을 開拓하지 않을 경우에는 硬貨의 自給自足 問題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長期的인 觀點에서는 현재 러시아정부가 推進하고 있는 루블화의 兌換化가 達成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루블화로 판매한 이후 長期的인 觀點에서 루블화 수익을 러시아내에 再投資하고 당분간 硬貨資金 需要를 持續的으로 投入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투자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4. 기 타

그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소들은 投資方式과 換率 問題이다. 100% 投資가 가능해 지기는 하였으나 여러가지 制度가 整備되지 않은 過渡期

에 나타나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상황에서 工場, 土地나 기타 러시아내 行政節次의 進行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合作方式이 安全하다고 할 것이다. 定型化된 제도보다 관행이나 人脈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 능력이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투자진출의 검토단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으로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내 개인기업가 들이다. 人事부분에서 언급된 대로 서방기업들은 이들을 특별대표 등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투자진출 사전검토의 안정성과 불안정한 제도하에서의 업무추진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Baker & McKenzie, *Joint Ventures in the Soviet Union : Law and Practice*, 1991, Paris.
- Business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cquisition and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and USSR*(Report No.2105), 1991, London.
- , *The Outlook for Joint Ventures, Investments and Privatization in the New " Soviet Union"*, 1992.
- , *Trade, Investment and Local Presence in the Republic of Russia*, 1992.
- IMF, *Economic Review : Russian Federation*, March 1992.
- IMF, IBRD, OECD, 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Vol.2, 1991, Paris.
- Michael J, Bradshaw, *Siberia at a Time of Change : New Vistas for Western Investment*, EIU Special Report No.2171, 1992.
- UNDP, *Valadivostok : Pre-Investment Study for Free Economic Zone in Primorsky Region*, 1991.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한소간 주요경제협정 자료집』, 자료 91-30-01, 1991.
- Kim & Chang 법률사무소, 『소련 외국인 투자관계 법률 개관』, 1991.
- 대한무역진흥공사, 『소련합작투자가이드』, 무공자료 91-60, 199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정책연구 91-20, 1991.

〈잡지류〉

-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 *Soviet Business Intelligence Bulletin*, Special Report : Taxation in Russian Federation, March 1992, Moscow.
- , *Soviet Business Interlligence Bulletin*, Vol. I , No. 1, January 1992 /

Vol. 1, No. 2, February 1992.

Business in the USSR, September 1991 / December 1991.

Business in the Ex-USSR, January 1992 / March 1992.

The Economic and Commercial Bulletin of the Soviet News Agency Tass, Special Issue 5, February 3, 1992 / Special Issue 7, February 10, 1992.

———, May 11, 1992.

Russia Express, No. 63, September 30, 1991 / No. 65, June 1991 / No. 76, April 13, 1992.

Business World Weekly, No. 009, March 31, 1992.

Bloc, December 1989 / January 1990.

Foreign Trade, June 1991.

IPECK, 『IPECK 북방경제』, '91년 11월호

북방지역센터, 『CNAS 북방경제』, '92년 4월호.

〈신 문〉

『한겨레신문』, '92년 2월 8일자, '92년 3월 10일자, 5월 8일자.

Tass, February 28, 1992 / March 10, 1992 / March 23, 1992 / April 10, 1992.

Eco-tass, December 7, 1991 / March 5, 1992 / April 6, 1992 / April 7, 1992.

FBIS, Daily Report, December 9, 1991.

『소련동구권정보(MARK통신)』, '91년 7월 1일자 / '91년 9월 5일자 / '91년 9월 15일자.

附 錄



〈부 록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1991. 7. 4 제정

제 1 장 總 則

이 法律은 러시아연방내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법적·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고 선진 외국의 기술, 경영기법뿐만 아니라 물질·재정적 資源을 유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러시아연방내 모든 外國人投資者와 外國人投資企業에 적용된다.

제 1 조 外國人投資者로 간주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外國法人(투자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 조직, 협회 등)으로 법인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투자할 권한이 부여된 자.
- 외국인으로서 소련내 市民權, 永住權이 없는 자나 외국에 영구거주중인 소련인으로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된 자.
- 外國 政府
- 國際機構

제 2 조 外國人投資 內容

利潤獲得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물질, 지적 투자는 외국인투자자로 간주된다.

제 3 조 投資方法

외국인투자자들은 다음 방법으로 투자할 권리를 갖는다.

- 러시아연방이나 다른 共和國의 自然人 혹은 法人과 合作으로 설립된 기업의 株式 매입
- 외국인의 100% 투자로 기업이나 子會社의 설립
- 러시아연방이 정한 법에 외국인 소유가 허가되는 企業, 건물, 設備, 株式, 債券 기타 有價證券이나 資產의 매입.
- 토지사용 및 天然資源 開發權의 획득
- 기타 財產權 취득
- 借款이나 融資提供, 재산 및 재산권의 제공 등 기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

외국인투자자들은 현행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소련회폐를 활용하여 투자한다.

제 4 조 投資對象

러시아연방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대상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경제분야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현대화된 固定 및 流動資産
- 有價證券
- 目的附 銀行預金
- 과학·기술업적
- 知的所有權
- 財產權

제 5 조 外國人投資의 法律的 規制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同法, 기타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國際協約에 따라 규정된다.

만약 러시아 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상에 규정된 내용이 러시아연방 법률과 상이할 경우 국제협약이 우선한다.

제 2 장 外國人投資의 保障

제 6 조 外國人投資의 法的 地位

러시아연방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이 법과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 및 國際協約에 의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외국인 투자의 법률적 지위는 이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러시아연방의 법인, 자연인의 재산, 재산권, 투자행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強制沒收, 국가기관 혹은 공무원의 不法行爲로부터의 보호

러시아연방내의 외국인투자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취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國有化 및 沒收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國有化 혹은 沒收 措置를 취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補償을 받는다.

국유화에 대한 결정은 러시아 최고회의가 수행한다. 몰수 및 징발에 관한 결정은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국가행정기구가 외국인투자의 몰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이를 러시아연방 法院에 제소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연방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조치, 이러한 機構 혹은 人士의 무책임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야기된 期待利潤喪失 등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損失補償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國有化나 몰수 혹은 징발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에 국유화되거나 몰수된 實際費用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투자가 이루어진 형태의 화폐나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外貨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러시아연방 현행 利率에 따라 利率도 보상되어야 한다.

기대이익의 상실을 포함하는 이법 제7조 둘째 문장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활동에 가해진 손실에 대한 보상은 그 이후에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제 9 조 紛爭解決 節次

補償節次, 補償額, 條件 등에 관한 분쟁 등 투자와 관련된 제반 분쟁은 만약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 最高法院이나 最高 仲裁裁判所가 담당한다.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러시아연방 국가기관, 기업, 공공기관 기타 러시아연방내 법인체간의 분쟁,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자간에 그들의 활동사항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 법원이 관할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재판소나 법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가 담당한다.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을 國際機構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海外送金の 保障

稅金이나 기타 경비를 지불하고 난 이후, 투자가 外貨로 이루어지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자유로운 過失送金이 보장된다.

- 利潤, 配當金, 利子, 特許料 및 커미션, 기술원조 및 다른 보상
- 기타 현금지불이나 계약에 따라 지불받는 금액
- 투자분의 매각이나 완전한 청산 이후에 외국인투자자 몫으로 배당 받는 금액
-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보상

제 11 조 러시아연방 내에서 支拂手段으로서의 硬貨使用 보장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나 러시아연방 및 기타 舊소련지역 여타 공화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소련화폐는 러시아 연방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再投資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소련화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免許를 획득한 러시아연방내 은행에 去來計座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좌로부터 해외로 돈을 송금할 수는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이런 루블화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러시아내 外換市場에서 외화를 구입할 수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收入代替 효과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러시아 대외경제관계부, 러시아연방 각료회의, 러시아내 각 공화국 각료회의로부터 免許를 획득한 기업은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연방이나 연방내 공화국의 硬貨基金을 사용하여 소련 대외경제관계 은행이 설정한 한도내서 합의한 비율에 따라 소련화폐로 획득한 이윤을 경화로 바꿀 수 있다.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및 清算

제 12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組織 및 법률상의 形態

러시아연방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株式會社, 다른 經濟合同 또는 組合 등 러시아연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업을 설립·활동할 수 있다.

- 외국인 投資持分이 있는 合作企業이나 다른 子會社 및 支社
- 100%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이들의 子會社 및 支社
- 外國法人의 支社

제 13 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節次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회사의 설립, 외국인 지분이 없는 既設立된 기업

의 株式買入, 혹은 全企業을 매입하는 형태 등으로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企業 및 自由企業, 經濟合同 및 組合에 관한 러시아 聯邦法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이 既設立된 기업이나 모든 기업의 주식을 러시아연방법과 이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제 14 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

대규모 건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전에 豫備審査를 받아야 된다.

특정 경우는 위생 및 역학 담당기관이나 생태계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업 설립 이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審査 및 許可는 러시아연방 법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개 공화국 이상에 대한 生態系的 影響을 미치는 경우는 관련된 공화국의 합동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연방 생태계 및 자연보호위원회는 이 합동위원회의 결론을 기초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 15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設立文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문서는 활동범위, 목적 및 투자자, 法定資本의 규모 및 조달과정, 投資者 持分, 경영기구 및 구성, 통제관계, 의사결정절차, 만장일치를 요하는 주제, 기업 청산절차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설립문서는 러시아 현행법에 일치하는 기업의 특수한 활동에 관한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法定資本에 대한 출자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출자자간 합의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 가격이 없을 경우 出資費用은 출자자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비용은 소련화폐나 외국화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때 러시아 중앙은행이 對外經濟關係에 적용하는 換率을 기준으로 루블화로 再算定하여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등록

등록업무는 러시아 재무부 혹은 다른 적법한 국가기관이 담당한다. 외국인투자액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러시아연방 閣僚會議의 承認을 받아 러시아 재무부가 관장한다. 러시아연방 각료회의는 러시아 재무부에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

시하고 이를 거부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시 아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合作會社의 경우

- 설립자의 서면 등록 신청서
- 공증한 설립문서 사본 2개
-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결과
- 소련측 법인
 - 자산소유자의 법인설립 결정서류나 위임받은 자의 결정서류, 출자자로 참여한 소련내 법인 각각의 설립서류(모두 공증한 것)
- 외국인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불능력 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외국인투자자가 본국의 기업등록기관(trade register)이 발행한 초록, 혹은 본국의 법률에 따라 시민권이나 영주거주권을 보유하고 합법적인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2. 외국인 100% 投資企業

- 서면 설립신청서
- 공증한 설립문서 사본 2부
- 외국인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불능력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외국인투자자 본국의 기업등록기관이 발행한 초록(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결과

3. 외국인투자회사의 支社 및 외국법인의 지사

- 기업 최고 경영자가 서명한 지사등록 신청서
- 권한 있는 경영기구의 지사설치 결정 사본(공증 필요)
- 지사설립에 관한 규칙 사본 2부(공증 필요)
- 모기업의 설립문서 사본 1부(공증 필요)
- 외국법인의 경우 모국의 기업등록기관이 발행한 초록 및 기타 모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법이 규정한 기타 심사결과

지사 및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설립문서의 수정사항이나 清算節次에 관해 등록된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책임있는 經營機構가 설립문서를 수정 혹은 변경하기로 결정한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공증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립문서의 변경 혹은 수정은 등록 후 효력이 있다.

제 1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登錄 處理期間에 대한 제한

러시아 재무부 혹은 다른 책임있는 국가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21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거나 합당한 이유로 登錄申請을 거절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登錄證을 교부받고, 등록과 함께 法人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등록사실은 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 당국에 통보되고 언론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 18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거부

외국인투자기업은 만약 設立節次가 러시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나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申請 拒否決定에 대해 法院에 異意提起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法人의 解散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법률의 규정 절차에 따라 解散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出資者가 法定資本의 50% 이상을 납부한 사실이 서류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이 기업의 등록을 담당한 기관은 기업의 경영불가를 인정하고 해산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산 사실은 언론에 공표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清算은 清算委員會 규정에 따라 회계사가 확인한 清算會計帳簿를 기초로 등록담당기관이 결정한다. 청산종료 사실은 언론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 4 장 외국인투자기업의 活動形態 및 條件

제 20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금지된 활동을 제외하고는 定款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株式去來와 관련된 保險 및 仲介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무부로부터 免許를 취득해야 한다.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면허를 얻어야 한다. 러시아연방 각료회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응하는 허가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子會社, 支社 및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연방법이나 여타 공화국법 혹은 외국법이 규정된 바에 따라 러시아연방내 혹은 외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정관에 적합하게 활동하며, 러시아연방내에서 은행구좌를 개설할 권한이 있다.

제 22 조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조건

외국인투자기업은 가격, 제공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기초로 러시아연방내에서 자사생산품(근로 및 서비스포함)의 판매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주택 및 점포 비용을 포함하여 러시아연방내에서 구입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루블화로 지불한다.

제 23 조 외국인투자기업 協會 및 團體

외국인투자기업은 反獨占法에 위반되지 않고 러시아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聯合, 協會, 콘체른, 支社間·地域間 協會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화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제 24 조 關稅

설립문서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法定資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분으로 러시아연방으로 유입되는 資産이나 物資生産 목적으로 유입되는 資産에 대해서는 關稅와 輸入稅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자는 관세가 면제된다.

제 25 조 제품 및 서비스의 輸出入

외국인 100% 출자기업 및 법정자본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은 러시아연방에 적용되는 國際協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自社 사용목적으로 免許없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自社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自社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이나 수출용 제품을 결정하는 절차는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製品原産地의 規則을 근거로 러시아연방 자료회의가 결정한다.

기업들은 제품수출을 통해 얻은 硬貨利潤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다른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26 조 硬貨의 자체조달

외국인투자자의 이윤 일부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화지출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한 硬貨利潤이나 러시아연방법에 저축되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체 조달한 경화로 충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화운용은 러시아연방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 27 조 財産 및 危險保險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및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면 기업 자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 28 조 課稅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課稅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른다. 경제의 주요부문이나 輿地에 대한 투자기업의 경우 稅制上의 特惠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9 조 과세목적의 조사

러시아 세무당국은 과세목적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 및 재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 30 조 會計帳簿 作成 및 會計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會計帳簿 記錄 및 會計業務는 러시아연방내 회계규칙 혹은 외국인투자자 본국의 會計規則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貸借對照表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 국가

은행이 대외경제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루블貨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제 31 조 擔 保

외국인투자기업의 資産은 融資등 債務의 擔保로 활용할 수 있다. 빌딩, 건축물, 자재 등에 관한 재산권과 다른 재산권도 담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된 재산 혹은 재산권을 계약한 가격으로 루블하나 외화를 받고 러시아연방내 시민 혹은 법인(법에 규정된 경우 외국법인 및 기타 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제 32 조 知的所有權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소유권은 러시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호되고 행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설립 문서에 명기된 계획에 따라 설정된 지적소유권에 관해 회사내 종업원들과 계약을 맺는다. 發明用 設備, 산업샘플, 商標 등은 기업과 고용자간의 계약체결 이후 기업이 취득할 수 있다. 종업원이 特許權을 기업에 讓渡하는 것과 이러한 계약체결등은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물질적, 산업적, 사회적 의무이다.

만약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발명품, 샘플, 상표 등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자에 귀속된다. 기업은 이러한 발명품 등을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독자적인 결정으로 발명품을 해외에 등록할 수 있다.

제 33 조 勞 働 關 係

雇用, 解雇, 勤勞條件, 賃金, 休暇, 기타 급여는 集團勤勞契約 및 個別勤勞契約에 기초한다. 집단근로계약 조건은 러시아법에 규정된 것보다 열악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외국인의 채용, 근로조건, 연금 등은 피고용자 각각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경화로 받는 임금은 所得稅를 내고 난 이후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내 노동조합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활동한다.

제 34 조 社會보험 및 諸手當

외국인투자기업의 社會保障 및 社會保護(외국인 근로자의 연금은 제외)

는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은 자국의 年金契約 條件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기금에 충당하도록 외화로 송금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연방이 정한 비율에 따라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및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5장 외국인투자자의 企業株式 및 기타 有價證券 取得

제 35 조 외국인투자자의 株式 혹은 기타 有價證券 구입

외국인투자자들은 러시아연방내에 있는 기업의 주식 혹은 기타 유가증권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연방 혹은 여타 공화국에서 얻은 이윤(루블화나 외화)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외화는 러시아 對外經濟銀行이 설정한 환율로 루블화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가 정한 換率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루블화로 환전한 경우는 이 루블화로 주식을 구매할 수 없다.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대금을 외화로 지불한 경우 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된다. 루블화로 株式購買 貨金을 지불한 경우는 외국인투자자가 法定資本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되며 이 법 제 25조에 규정된 특혜를 받는다.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혹은 기타 有價證券을 구입한 사실은 러시아연방 재무성 혹은 다른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국가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株式去來所에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주식거래소 및 거래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제 36 조 외국인투자자의 國債買入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 재무부 혹은 공화국의 중앙재무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채를 구매할 수 있다.

제 37 조 외국인투자자의 民營化 참가

외국인투자자는 국가나 도시의 民營化뿐 아니라 未完成된 건설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 경쟁 및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은 러시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주식 혹은 기업의 구입 비용은 소련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

민영화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 혹은 여타 공화국에서

이윤으로 확보한 루블화로 그들 銀行計座에 보유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소련중앙은행이 대외경제관계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구입한 루블화를 민영화에 참가하기 위한 資金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소련中央銀行이 對外經濟關係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환율로 외화를 루블화로 환전하여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및 기타 권한이 있는 은행에 비축할 수 있다. 上記와 같은 수단은 민영화 참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上記 計座에 남아 있는 외화로 다시 전환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6장 외국인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나 기타 재산을 구매할 권리

제 38 조 토지 및 기타 天然資源 購買權

외국인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권, 임차권, 천연자원 구입권은 러시아 토지개혁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 39 조 資產의 賃貸

소련내 자산소유자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자산을 임대해 줄 수 있다.

1억 루블을 초과하는 러시아연방 재산은 이 자산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해 줄 수 있다.

제 40 조 讓渡契約

외국인투자자는 양도에 관한 러시아법률에 따라 러시아 각료회의 혹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양도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재생가능 혹은 재생불가능한 天然資源 開發權을 획득할 수 있고, 기업이나 경제활동의 전면적인 수행을 위해 기업, 단체, 협회로 이관되지 않은 국가소유의 재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契約書의 條件은 讓渡의 性格,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5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양

도계약은 러시아연방내 적용되는 법령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것들은 러시아 최고회의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自由經濟地區(FEZ)에서의 외국인투자

제 41 조 自由經濟地區

외국자본, 해외선진기술, 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輸出潛在力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유경제지구가 설치되었다.

자유경제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여타 지역과 다른 優待體系를 부여한다.

제 42 조 FEZ에서의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조건

FEZ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러시아 現 법률에 규정된 권한외에 다음 특권이 부여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登錄節次の 單純化: 외국인인 투자규모가 7,500만 루블 이하인 경우는 당국이 즉각 등록을 한다.
- 稅制優待: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로 송금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러시아연방법이 설정한 세율의 50%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
- 土地 및 기타 天然資源 이용에 대한 낮은 이율 : 70년까지의 賃借權 및 再貸貸 권리
- 特別關稅體系 : 수출입 관세에 낮은 세율적용 및 국경통과 절차의 간소화
- 외국인의 출입국시 비자면제 등 간편한 절차

FEZ에서의 특권종류 및 범위는 러시아 각의 결정 이후 최고회의의 기준을 받았다.

〈부 록 2〉 러시아연방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이 布告令은 對外經濟活動의 促進, 國內市場 經濟의 安定 및 外國投資 誘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企業所有의 形態와 상관없이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모든 企業 및 企業合同에 특별한 허가없이 對外經濟活動(中繼業 포함)을 허가한다. 外換去來는 러시아연방법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기초로 수행된다.

제 2 조 對外交易에 있어 러시아연방법에 기초하지 않은 바터제 규제를 한 달內에 러시아연방 정부는 폐지한다.

매달 輸出·入 品目(勞動·用役) 및 쿼터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1992년 1월 1일까지 1992년도 輸出·入 商品(勞動 및 用役)을 위한 라이선스 및 쿼터제를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1992년 1월 1일까지 輸出·入에 따른 課稅節次 및 課稅率, 關稅率賦課를 위한 계획안을 제출한다.

제 3 조 러시아연방의 外換去來 指定銀行이 法人 및 市民의 銀行口座 개설을 허가한다. 시민의 個人銀行口座에 적용될 外換은 특별한 규제나 승인이 없이 이행된다.

제 4 조 1992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연방 外換保有庫 형성을 위해 러시아연방內 등록된 企業의 外換 所得의 일부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매각한다.

- 企業 外換所得의 의무적 매각의 기준은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 러시아연방 정부는 연방 중앙은행에 기업의 外換所得의 의무적 매각을 위한 루블환율을 고시한다.

- 이로 인한 러시아연방 外換保有庫는 外債支拂에 사용된다.

- 1992년도 輸入補助 削減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한다.

제 5 조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法人 및 市民의 指定銀行을 통한 外換去來 및 購買에 관한 규제를 해제한다.

- 러시아연방內 등록된 企業에게 外換賣却을 상품 및 서비스 輸入을 위한 용도로 한정하며 外國投資者에게 外換의 賣却은 利潤 및 配當金の

海外送金 용도로 한정한다.

- 루블의 外換換率은 需要와 供給原則에 따라 형성되는 銀行 및 法人 또는 市民間의 外換賣買에 의해 결정된다.
-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外換賣買의 商業換率 및 交換換率 차이의 상한선 및 市民의 外換購買 및 海外送金 상한선을 고시한다.

제 6 조

- 구소연방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 의해 규정된 의무적 外換控除 및 輸出·入稅를 무효화한다.
- 구소연방 고스방크에 의해 규정된 루블의 외환환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7 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外換市場의 國際化 및 外換交換制度의 확충을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 8 조 러시아연방내 法人間 또는 法人 및 市民間의 外換去來를 금지한다. 단, 특정 自由經濟地域에 위치한 상점에서의 外換去來는 허가한다.

제 9 조 러시아연방에 등록되어 있는 法人 및 러시아연방 정부가 규정하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市民의 外國證券 購買 및 海外投資는 허가된다.

제10조 러시아연방 司法部에 現 布告令과 관련 러시아연방 결정안 변경에 관해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11조 現布告令은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단,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의 첫번째 문항은 1992년 1월 1일부로 발표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1년 11월 15일

〈부 록 3〉 러시아聯邦내 商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 결정 No.90

1991년 12월 31일 字 제정

-1991년 11월 15일자 대통령 포고령 213호 “러시아연방내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하여”를 실행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商品 輸出入에 대한 免許賦與 및 쿼터 설정에 관한 단일 절차를 도입한다.

이것은 러시아연방과 舊蘇聯邦 구성 공화국들과의 상품 수출입에 적용되며 러시아정부가 체결한 政府間 協定에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상품수출입에 관한 면허 및 쿼터부여 절차는 所有形態, 기업그룹, 登錄場所 등에 상관 없이 러시아연방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단 러시아연방법에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2. 다음을 승인한다.

-1992년도 쿼터한도내에서 수출될 상품리스트(첨부 1번)

-러시아연방 정부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기초로 1992년도에 수출입될 상품리스트(첨부 2번)

-1992년도에 수출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 特定商品(근로, 서비스) 리스트(첨부 3, 4번)

-러시아연방내에서의 상품(서비스, 노동) 수출입 활동에 관한 免許賦與 및 쿼터설정 節次에 관한 규칙(첨부 5번)

3. 對外關係部 傘下의 對外經濟關係委員會는 아래 사항들을 러시아정부에 제출한다.

-1992년 1월 15일 이전: 관련부처 및 부서와 협의하여 첨부물 2번에 나열된 상품리스트의 수출입 면허에 관련된 草案.

-1992년 1월 15일까지: 러시아연방 經濟·財務部 및 國家關稅委員會와 협의하여 原資材나 生産 및 技術協力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

입하는 절차에 관한 초안

4. 첨부물에 나열되지 않은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제한은 러시아 정부의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5. 對外關係部 傘下 對外經濟關係委員會는 經濟·財務部와 貿易·資源部와의 합의하에 국내시장 사정을 고려하여 첨부물 1번에 기재된 쿼터가 적용되는 수출 상품리스트 품목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6. 첨부물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 수출입 면허를 발급하는 권한은 對外關係部 傘下 對外經濟關係委員會가 해당지역에 파견한 합법적 대표가 수행한다.
7. 對外關係部 傘下 對外經濟關係委員會는 1992년 1월 15일 전까지 '免許申請節次'에 관한 指針을 작성한다.

국가관세위원회는 1992년 1월 15일 이전까지 免許證을 稅關 公務員에게 제시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8. 첨부물 1번에 포함된 상품의 수출면허는 러시아연방내 상품수출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經濟·財務部가 설정하여 관련부처 및 부서에 배포한 쿼터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이러한 상품의 수출쿼터 보유사실은 證明書로 확인되며 증명서는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증명서 소지자는 면허를 얻을 권리가 있다. 증명서는 경제활동 주체로서 러시아연방내에 등록된 기업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획득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稅制 및 外換控除 惠澤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증명서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9. 대외관계부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는 경제·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과 합동으로 1992년 3월 31일까지 증명서 양식과 이를 매각하는 절차 및 발급문제를 결정한다.
10. 이 결정 첨부물 제2장에 나열된 수출상품 쿼터는 1991년 8월 27일자 러시아연방 각료회의 결정 No. 445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된다.
11. 구소연방과 EC 사이에 체결된 '纖維製品 交易에 관한 協定'을 준수하기 위하여 첨부물 1번에 나열된 섬유제품의 EEC에 대한 수출면허는 1992년에도 적용된다.

러시아 경제·재무부는 CIS국가들과 합동으로 上記 協定에 나열된 섬유

제품의 EEC 수출 쿼터를 분배한다.

EC국가들에 대한 섬유류 수출 라이선스 부여는 러시아 대외관계부 산하의 대외경제관계위원회가 준비하고 原產地 證明書 發給業務는 이 협정에 규정된 형태에 따라 러시아연방 상의가 수행한다.

12. 대외관계부 산하 대외경제관계위원회는 개별공화국이 발급한 라이선스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대외관계부산하의 대외경제관계위원회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증명서를 판매할 때 러시아 경제·재무부가 정한 만큼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이 수수료는 국가수입으로 귀속된다.

13. 러시아연방 관세사무소 강제규정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상품 수출입에 관한 직접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船積書類를 근거로 상품수출입에 관한 통제를 한다. (단 강제규정에 의한 보고를 기초로 통제가 행해지는 구 소연방 구성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상품교역의 경우는 제외된다.)

14.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는 허가를 받은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陸路運送 혹은 海上運送 業務를 수행하는 기업, 조직, 시민 및 수송수단의 소유자는 선적서류에 러시아연방 관세업무 담당기관의 승인이 없는 물품을 선적해서는 아니된다.

러시아연방 국가관세위원회는 1992년 1월 15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交通部, 內務保安部와 협의하여 이러한 承認樣式 見本을 만든다.

15. 러시아연방 내무보안부는 관세기구의 승인 없이 러시아연방 밖으로 상품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輸送手段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16. 러시아연방 關稅機構는 면허를 받아 수출하는 제품도 이 결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關稅規則 위반으로 간주한다.

러시아연방 관세법이 발효될 때까지 이 결정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러시아연방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蘇聯邦關稅法을 적용한다.

러시아연방 國家租稅當局은 관세당국의 승인 없이 물품운송을 한 운송수단의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이 벌금은 輸送物品의 시장가격 규모로 부과되며 러시아연방 보안내무부소속 기관이 채택한 결정을

근거로 관세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地方豫算으로 환수된다.

이 벌금은 관세사무소가 이 문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환수한 돈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50%: 지방예산, 25%: 보안내무부 지방기관, 25%: 관세사무소

〈부 록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1991. 12. 31 제정

1992. 4. 1 제정

대통령 포고령 213호('91. 11월 15일字) '러시아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따라 러시아연방 閣議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輸出構造를 改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1992년 1월 1일부터 바터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제품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輸出稅를 부과한다. 수출세는 기업, 조직의 소유형태, 등록장소 등에 상관없이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수출세는 共和國 豫算에 편입되어 外換保有高를 유지하기 위한 外換購買에 사용될 것이다.

2. 수출허가 품목리스트와 이들에게 부과될 輸出稅率을 승인한다.

수출세 및 수출품목리스트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3. 수출세는 상품 무게단위에 의한 고정비율에 따라 ECU로 설정한다.

수출세는 상품의 通關 移轉이나 通關中에 과세된다. 세금은 과세당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루블의 市場換率에 따라 루블로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화수익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기업 및 조직은 수익 일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국가관세위원회가 이 기업들이 반드시 수출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인가된 은행의 보증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60일 이내의 猶豫期間을 두고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1日 별금은 0.03%)

4.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에 수출세 부과권을 부여한다. 수출세를 부과하는 절차는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가 러시아 대외경제·재무부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는 경제·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1주일내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제정하여 공포해야 한다.

5. 硬貨收益 一部를 러시아연방 硬貨保有高에 매각할 의무가 있는 수출업자는 수출세 납부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補償規模는 공화국 硬貨保有 基金에 대한 경화의무매각 쿼터와 ECU로 지불한 稅金 納付時의 市場換率과

義務賣却時의 特別換率간의 차액이다. 경제·재무부는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수출세로 형성한 공화국 경화보유 기금에서 上記 補償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6. 1992년 5월 1일부터 경화의 의무적 매각에 관한 법률과 무관한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30% 증가되어 부과된다. 대외경제부와 국가관세위원회는 수출세 면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7. 소정 절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세는 關稅當局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조세당국이 還收한다. 기간이 지난 경우나 러시아연방 조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법인의 대외경제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법 및 以前の 蘇聯關稅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연방법은 러시아 법과 상치되지 않아야 하며 未支拂金回收을 위해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1992년 1월중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硬貨收益이 확보될 때까지 수출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未納된 輸出稅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商業借款 形態로 간주된다. 수출세를 재납부할 때 이자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를 연기하는 기업의 輸出稅는 製品이 國境을 통과하는 시점의 商業換率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별첨 : 수출세 적용대상 품목 리스트(본 부록에서 생략함).

〈부 록 5〉 韓·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護에 관한 協定

大韓民國 政府와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聯邦政府(이하 “締約當事國”이라 함)는 兩國間 相互 利益을 위한 經濟協力 強化를 希望하고, 一方 國家의 投資家에 의한 타방 國家 領域內에서의 投資를 위하여 유리한 條件을 造成하고자 하며, 이 協定の 基礎 위에서 投資의 獎勵 및 保護가 이 分野의 企業上 創意를 促進시킨다는 것을 認識하여, 다음과 같이 合議하였다.

第1條 定 義

이 協定の 目的上,

1. “投資”라 함은 타방 締約당사국의 領域에서 一方 締約當事國 投資家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形態의 資産을 意味하며 특히 아래사항을 包含한다.

가. 動産, 不動産 및 抵當權, 유치권, 질권 등 기타 財産權

나. 待分, 株式, 證券 및 私債 또는 會社, 企業, 合作會社에 대한 여타 모든 形態의 參與

다. 金錢 또는 經濟的 價値를 지닌 投資關聯 모든 行爲에 대한 請求權

라. 著作權, 商標權, 特許, 産業디자인, 技術工程, 노하우, 營業秘密 및 商號權 등을 包含한 知的財産權, 營業權

마. 自然資源의 深査, 抽出, 개간 또는 開發을 위한 權利를 포함하여 法 또는 契約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權利, 投資資産의 形態의 變更은 同 資産의 投資로서의 性格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2. “投資者”라 함은 각 締約當事國에 있어서

가. 法에 의거하여 일방 締約當事國의 國民인 自然人

나. 各 締約當事國의 法에 의거하여 設立된 法人, 社會, 商社, 企業, 組織 및 協會 등을 意味한다.

다만 同 自然人, 法人, 會社, 商社, 企業, 組織 또는 協會 등이 締約當事國의 法에 의하여 타방 締約當事國 領域內에서 投資를 行할 資格이 있어야 한다.

다. “收益”이라 함은 投資에 의하여 얻은 金額을 意味하며, 다음에 局限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利潤, 利子, 資本收益, 配當, 使用料 또는 料金を 의

미한다.

라. “領域”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 또는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聯邦의 領域을 의미하며 該當國家 自然資源의 探查 및 開發目的으로 國際法에 따라 主權的 權利를 행사하는 上記 領域의 영해 외곽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海上水域도 포함한다.

第 2 條 投資의 增進 및 保護

1. 各 締約當事國은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에 의한 自國 領域內 投資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며, 自國 法令에 따라 그러한 投資를 許容한다.
2. 各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는 타방 締約當事國의 領域內에서 항상 公正하고 公平한 待遇를 받으며, 충분한 保護와 安全을 향유한다.
3. 各 締約當事國은 自國 領域內에서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管理, 維持, 사용, 향유 또는 處分에 대하여 非合理的이거나 차별적인 措置로 損失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4. 各 締約當事國은 自國 領域內에서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와 관련하여 이 協定에 따라 自國이 負擔하는 모든 義務를 준수한다.

第 3 條 投資의 待遇

1. 일방 締約當事國은 自國 領域內에서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 또는 收益에 대하여, 동 일방 締約當事國이 自國의 投資者 또는 第3國 投資者의 投資 또는 收益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待遇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일방 締約當事國은 自國의 領域內에서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管理, 유지, 使用, 향유 또는 處分과 關聯하여, 동 일방 締約當事國이 自國의 投資者 또는 第3國 投資者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優待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3. 各 締約當事國은 本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부여되는 內國民待遇에 대한 限定的 例外措置를 自國 法令에 따라 취하거나 維持할 權利를 유보한다.

다.

第 4 條 損失에 대한 補償

일방 締約當事國의 投資者가 타방 締約當事國 領域內에서 행한 投資가 타방 締約當事國 領域內에서 무력충돌, 國家非常事態 또는 소요 등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을 경우, 타방 締約當事國은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自國의 投資者 또는 第3國 投資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待遇를 부여한다. 補償支給은 充分해야 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送金할 수 있어야 한다.

第 5 條 收 用

1. 各 締約當事國 投資者의 投資는 公共目的을 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타방 締約當事國의 領域內에서 國有化 또는 收用되거나 혹은 國有化 또는 收用に 상응하는 效果를 가지는 措置(이하 “收用”이라 함)를 받지 아니한다. 收用은 適法節次에 따라 非差別的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迅速·充分·有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상기 보상은, 收用直前 또는 收用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중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投資의 實質價格에 相當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2個月內에 행하여져야 하며, 收用日로부터 支拂日까지 정상 商業利率에 따른 利子を 포함하여야 하고, 有效하게 現金化되며 또한 자유로이 送金할 수 있어야 한다.
2. 影響을 받은 投資者는 收用을 행하는 締約當事國法에 의거하여 同 締約當事國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獨立當國에 대하여 本條의 第1項에 規定된 原則에 따라 當該事件과 當該 投資價値의 算定에 관한 조속한 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第 6 條 投資 및 收益의 回收

1. 各 締約當事國은 아래사항을 自國 領域 밖으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送金하는 것을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들에게 保障한다.

- 가. 投資로부터 發生되는 收益
 - 나.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가 행한 投資의 賣却이나 全面的 또는 部分的 清算으로 인한 收益金
 - 다. 投資와 관련된 債務의 辨濟資金
 - 라. 投資가 행하여진 締約當事國의 法令에 근거한 타방 締約當事國 國民의 所得
 - 마. 最初資本 및 投資의 增大를 위하여 필요한 補充的 資金
2. 이 協定의 目的上 換率は 投資가 행하여진 締約當事國에서 有效한 外國 換管理規定에 따라 送金 당일 적용될 수 있는 換率이다.

第 7 條 例 外

이 協定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은 아래 사항에 의하여 일방 締約當事國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待遇, 特惠 또는 特權의 惠澤도 타방 締約當事國의 投資者에 대하여 동 일방 締約當事國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兩 締約當事國 중 어느 일방이 當事國이거나 當事國이 될 현존 또는 장래의 關稅同盟, 自由貿易地帶, 共同對外關稅地帶, 通貨同盟, 유사한 國際 協定 또는 기타 地域協力形態 또는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課稅에 관한 國際協定이나 國際約定

第 8 條 代 位 辨 濟

- 1. 일방 締約當事國이나 同國이 指定하는 機關이 타방 締約當事國의 領域內에서의 投資에 대한 保證에 의하여 일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에게 이득이 되는 支拂措置를 하는 경우 타방 締約當事國은 보상을 완전히 지불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請求權을 법 또는 法的去來에 의하여 일방 締約當事國이나 同國이 지정하는 機關으로 移轉함을 認定한다.
- 2. 일방 締約當事國이나 同國이 지정하는 機關은 投資者가 행사할 資格이 있는 모든 權利와 請求權을 동등히 行使할 資格이 있다.

第9條. 一方 締約當事國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간의 投資紛爭解決

1. 일방 締約當事國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간의 어떠한紛爭도紛爭當事者間に 友好的인 方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이 協定 第4條 또는 第5條에 의한 보상 또는 이 協定 第5條에 따른 收用行爲의 結果로 발생하는 기타 問題 또는 이 協定 第6條의 不履行 또는 그릇된 履行의 結果에 관한 타방 締約當事國의 投資와 관련된 일방 締約當事國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간의 어떠한紛爭이 一方當事者가 友好的 해결을 要請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同紛爭은 投資者에 의하여 仲裁재판에 회부된다.
3. 本條 第2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타의紛爭도紛爭當事者가 합의하는 경우 仲裁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4. 이 경우 同紛爭은 1976年 12月 15日 國際聯合總會決議 31/98로 채택된 國際聯合 國際商去來法委員會 仲裁規則에 따라 해결된다.

第10條 締約當事國간의紛爭

1. 이 協定の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締約當事國간의紛爭은 가능한 한 外交經路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締約當事國간의紛爭이 위와 같이 6個月 以內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同紛爭은 일방 締約當事國의 要請에 의거하여 仲裁裁判所に 回附된다.
3. 仲裁裁判所는 個個의 事件을 위하여 아래의 方法으로 구성한다.
仲裁要請 接受後 2月 以內에 各 締約當事國은 各各 1人的 裁判官을 任命한다. 任命된 2人的 裁判官은, 양 締約當事國의 승인을 받아 仲裁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함)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2人的 재판관이 任命된 날로부터 2個月 以內에 任命되어야 한다.
4. 本條 第3項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任命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 締約當事國은 別途의 합의가 없으면 國際司法裁判所 所長에게 그러한 任命을 행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소장이 일방 締約當事國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遂行할 수 없는 경우에는, 副所長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이 일방 締約當事國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締約當事國의 국민이 아닌 者로서 國際司法裁判所의 차상급 裁判官이 필요한 任命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5. 仲裁裁判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결정은 兩 締約當事國을 拘束한다. 각 締約當事國은 자국 裁判官의 費用과 仲裁節次上 자국 대표의 비용을 負擔한다. 裁判長의 費用과 殘餘費用은 兩 締約當事國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仲裁裁判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第 11 條 協定の 適用

이 協定은 1987年 1月 1日 이후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에 의하여 일방 締約當事國 領域內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적용된다.

第 12 條 다른 規則의 適用

1. 어떤 事案이 兩 締約當事國이 當事國인 다른 國際協定에 의하여 이 協定과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協定の 어떠한 規定도 타방 締約當事國 領域內에서 投資하고 있는 일방 締約當事國의 投資者가 자신의 事件에 더욱 有利한 規則을 이용하는 것을 禁하지 아니한다.
2. 일방 締約當事國이 法令에 따라 타방 締約當事國 投資者에게 賦與하는 待遇가 이 協定에 의하여 부여되는 待遇보다 有利한 경우, 더 有利한 待遇가 부여된다.

第 13 條 協 議

일방 締約當事國은 이 協定の 해석 또는 適用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타방 締約當事國에 協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타방 締約當事國은 그러한 협의에 대하여 好意的 고려를 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한 適切한 機會를 提供한다.

第 14 條 發效, 有效期間, 終了 및 改正

1. 各 締約當事國은 이 協定 發效를 위하여 自國法에 의하여 요구되는 節次의 完了를 타방 締約當事國에 通告한다. 이 協정은 두번째 通告 日자로 부터 30일 후에 發효한다.
2. 이 協定은 15年間 有效하다. 이 協정은 그 후 日방 締約當事國이 타방 締約當事國에 終了를 書面 通告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滿了될 때까지 계속 有效하다.
3. 이 協定이 有效한 期間 동안에 行하여진 投資에 관하여, 이 協定의 規定은 協정 終了日로부터 10年間 有效하다.
4. 이 協定은 締約當事國의 相互 合議에 의하여 改正될 수 있다.

〈부 록 6〉

韓·蘇間 貿易協定

大韓民國 政府와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聯邦政府(以下 複數로 “兩當事國 政府”, 單數로는 “當事國 政府”라 함)는, 平等과 互惠의 기초 위에서 兩國間 貿易關係를 發展시키고 擴大시킬 것을 希望하고, 經濟的 紐帶關係가 兩國間的 關係 強化에 있어서 重要하고 必須的인 要素임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 條

兩 當事國 政府는 兩國間 貿易關係를 增進하고 促進하기 위하여 自國 法令의 範圍內에서 모든 適切한 措置를 취한다.

第 2 條

1. 各 當事國 政府는 貿易에 關聯된 모든 事項,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最惠國待遇를 賦與한다.

가. 수출입 또는 그와 關聯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徵收方法

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國際移轉

다. 通關, 通過, 保稅倉庫 및 환적에 관한 規則과 節次를 包含한 輸出入 關聯 規則과 節次

라. 輸出品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賦課되는 모든 種類의 租稅 및 餘他 國內賦課金 및

마. 國內市場에서의 物品의 販賣, 購入, 輸送, 流通, 保管 및 利用에 관한 規則

2. 各 공화국 政府는 상대국의 영토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의 輸入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適用, 許可證 賦與 및 그러한 수입의 結제에 필요한 외환의 배정과 關聯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

3. 본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당사국 政府가 國境貿易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隣接 國家에게

賦與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利益

나. 일방당사국 정부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 關稅同盟 또는 自由貿易지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는

다. 일방당사국 정부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一般協定 및 기타 國際協定에 의하여 開發途上國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第 3 條

1. 物品과 用役의 交易은 가격, 품질, 납품 및 支拂條件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소련의 對外經濟關係 참가자(이상 “소련법인”이라 칭함)를 지방당사자로 하는 契約에 의하여 시행된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連繫去來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됨에 同意한다. 어느 당사국 정부도 일방국의 법인 및 自然人에게 連繫貿易 業務를 遂行하도록 요구하거나 勸獎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또는 自然人이 連繫貿易 業務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 정부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第 4 條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商業行爲를 수행함에 있어서 身體 및 財産保護와 관련하여 最惠國待遇를 향유한다.

第 5 條

1. 個別去來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간의 모든 商業去來는 각국에서 有效한 法令에 따라 自由兌換性 通貨로써 이루어진다.

2. 어느 일방당사국 정부도 물품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 영토의 送金에 제한을 附課하지 아니한다.

3. 본조 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품과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 정부는 상대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最惠國待遇를 부여한다.

가.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金融機關에 있어서 외화와 현지 通貨로의 口座 개설, 유지 및 예탁된 자금에의 접근

나. 각 당사국과 제3국 영토간은 물론 양 당사국 영토간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金融證書의 支拂, 送金 및 移轉

다. 外換 換錢業務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

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

第 6 條

양 당사국 정부는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물품의 輸出入에 관한 關稅, 租稅 및 기타 賦課金을 免除한다.

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

나. 조립 또는 修繕目的으로 搬入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다. 실험 및 평가용 품목

라. 博覽會, 展示會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마.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修行者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用役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서 再輸出되는 경우

바. 返還條件附로 國際貿易에 사용되는 형의 특수 컨테이너 및 용기

第 7 條

1. 양 당사국 정부는 관심있는 대한민국의 法人 및 自然人과 소련법인이 무역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獎勵한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去來 當事者 物色, 출판물과 컴퓨터 정보 서비스 및

혁신적 기술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역하게 하는 商業協力を 증진시킴으로써 中小企業에게 적절한 支援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 및 상대국 영토내에서 博覽會, 展示會, 방문 및 세미나 등의 무역행사의 개최를 獎勵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 정부는 각자의 관련기관, 시민 및 사회의 동 행사 참가도 獎勵하고 촉진한다.

第 8 條

화물을 船積한 각 당사국의 商船은 상대국 항구에서 입·출항 및 碇泊에 있어서 그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연안항해에 從事하는 船舶을 제외한 제3국 國旗揭揚 船舶에게 부여되는 최혜국대우의 이익을 향유한다.

第 9 條

각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당사국 정부는 다음 상품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

- 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 또는
- 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

第 10 條

1.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 상대국 법인의 상업사무소(대표부 포함)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된 것과 同等한 待遇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
2. 각 당사국 정부는 無差別待遇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第 11 條

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재판소와 行政機關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출두함에 있어서 內國民待遇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적 영토내에 訴訟 또는 판결의 執行, 仲裁判定의 승인 및 執行節次 또는 기타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商業去來에 관한 과세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인 및 자연인과 소련법인간에 締結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依據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3. 紛爭當事者間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중재의 장소로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聯邦을 제외하고 1958년 6월 10일 뉴욕에 署名된 외국 중재판정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國際聯合協約의 당사국 중 1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어느 것도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選好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紛爭解決方式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당사국 정부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第 12 條

이 협정의 제규정은 일방당사국 정부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관에 금지나 제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안전의 보호

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 또는

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

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양국간의 무역을 非合理的으로 差別하거나 無分別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행되어서는 아니된다.

第 13 條

양 당사국 정부는 양 당사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共同委員會의 설치에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施行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 정부에 양국간 貿易發展 및 擴大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 연 1회,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第 14 條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 정부가 타방당사국 정부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씩 계속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제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締結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履行되지 아니한 모든 商業契約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適用된다.

〈부 록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

1991. 7. 5 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소련 및 각 공화국의 外國投資에 관한 法規

소련 영내에 있어서 外國投資와 관련된 諸般關係는 본 ‘基本法’ 및 외국 투자에 관한 소련연방과 각 공화국의 기타의 법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소련과 각 공화국의 法規에 의해 規制받는다.

이 경우 각 공화국 영내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제반관계는 본 ‘基本法’에 의거 각 공화국의 經濟活動과 投資政策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각 공화국의 法規에 의해 규제될 것이나, 연방관할하에 있는 諸般關係, 연방에 의한 제반관계의 規制의무가 소련의 國際條約에서 발생하는 제반관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外國人投資者

소련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다.

a) 外國法人, b) 外國市民, 無國籍者, 외국에 居住地가 있는 蘇聯市民, c) 法人 자격이 없는 外國合同, d) 外國國家, e) 國際組織

제 3조 外國人投資 및 投資形態

외국인투자자는 소련 영내에서 아래 방식으로 投資를 할 수 있다.

a) 소련의 法人·市民과 共同으로 한 企業·組織에의 지분참가, b) 외국 자본가에 완전히 歸屬되는 企業設立, c) 株式 및 기타의 有價證券을 포함한 財産의 取得, d) 土地 및 기타의 天然資源의 이용권 취득, 또는 독립 혹은 소련법인·시민참가를 도모한 기타의 財産權取得, e) 외국투자에서 기타의 형태를 규정한 소련의 法人·市民과의 協定締結.

제 4조 企業의 탈국유화 및 민영화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외국법인·시민·법인권을 갖지 않는 外國合同, 國際組織, 또는 無國籍者 및 외국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소련시민은 소련영내에서 全聯邦所有, 共和國所有, 공공소유하에 있는 기업의 비국유화 및 민영화에 참가할 수 있다.

상기 외국인투자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연방 소유기업(혹은 그 일부)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공화국 및 公共所有企業의 非國有化 및 私有化에 참여하는 조건은 각 공화국의 법규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的 條件

소련 영내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련 및 공화국 법률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련 企業, 團體 및 市民의 財産 및 財産權과 投資活動에 대한 條件과 同等하다. 외국인투자유치于先 經濟部門과 地域에 대해서는 연방 및 공화국 法律에 의거 추가적인 稅制 및 기타 惠澤을 賦與할 수 있다.

제6조 活動의 種類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은 소련과 각 공화국의 法規에 의거 금지되어 있지 않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個別的 活動種類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許可(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제7조 外國人投資를 위한 地域的 制限

소련 및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영역을, 국방 및 安全保障의 確保를 고려하여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제8조 外國人投資 관련 國家機關

소련 영내에서의 외국 투자의 유치와 이용에 관한 全 聯邦 次元의 정책 입안 및 실행, 투자활동에 대한 조정, 外國人投資者와 外國 合作企業에 대한 影響力 행사는 각 공화국 대표를 포함하는 소연방 內閣 傘下 國家機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장 外國人投資의 保障

제9조 法規變更으로부터의 保證

만일 이후의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가 투자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에 대해 투자가 실시된 시점에서 효력을 가졌던 법규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이 규정은 國防, 國家安全, 社會的 節次(課稅, 信用 및 財政), 環境保全, 주민의 도덕 및 건강의 보장에 관계되는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 또는 단독점법규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 조 國有化 및 몰수로부터의 保護

소련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는 국유화가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天災, 事故, 流行病, 傳染病 및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몰수조치는 國家權力機關의 허가에 의거 도입된다. 國有化 및 몰수에 관한 조치는 차별적 성격을 지닐 수 없다.

몰수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몰수재산에 상응하는 유효한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賠償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국유화에 관한 결정 내지 몰수조치의 적용시점에 있어서의 實際投資價值와 합치해야만 된다. 賠償은 외화로 지불되고 투자자가 원하면 외국으로 送金할 수 있다.

배상의 規模, 支拂期日, 節次에 관한 紛爭은 소련법규에 의거 소련의 법원에서나 쌍방간 협정내지 소련의 國際條約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제3국의 법정을 통해 해결한다.

제 11 조 投資活動中止의 保護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활동이 정지되었을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불되는 배상권을 갖는다. 투자활동과의 관련으로 얻은 소득은 투자활동이 정지된 시점에서 實際價值에 의한 貨幣내지 商品形態로 獲得한다.

제 12 조 所得 및 기타 金額送金の 保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법규에 의거 획득한 소득 및 기타 금액을 외화로 해외에 送金하는 것을 保障받는다.

제 13 조 蘇聯通貨에 의한 利潤利用의 保障

소련영내에서 소련통화로 획득한 외국인투자자의 利潤은 소련영내에서 再投資할 수 있으며, 또한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위임된 소련의 은행에 루블화로 口座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자기구조에 있는 루블자금을, 소련의 법규가 허용하는 외화와 루블賣買 형태범위내에서 성립되는 換率로 외화를 取得하는 데 이용

할 수 있다.

제 3장 外國投資를 수반하는 企業創案 및 活動

제 14 조 外國投資를 수반하는 기업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자의 參加企業(合作企業), 외국인투자자에 완전히 歸屬되는 기업이다.

-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은 소련의 법인이다.
-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은 株式會社, 有限會社 및 기타 社會團體나 會社의 형태 또는 소련과 각 공화국 법규에 矛盾되지 않는 임의의 형태로 설립된다.

합작기업설립에 관한 결정은 그 설립자에 의해 獨自的으로 이루어진다. 소련측의 참가자가 國有企業내지 社會的 組織企業일 경우 合作企業 設立에 관한 결정은 財產所有者 내지 그에 의해 委任된 機關과 합의하여 그 설립자에 의해 결정된다.

- 완전히 외국인투자자에 歸屬되는 기업설립에 관한 결정은 該當企業이 설립되는 영토의 공화국 법규에 의거 규정된 절차에 의해 채택된다.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은행설립의 特殊性은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소련법규에 의거 규정된다.

제 15 조 生態系 및 保健·衛生 檢査

외국인 합작기업을 설립할 때 그 설립자는 소연방 및 공화국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절차에 따라 생태계 및 보건·위생상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검사를 마쳐야 한다. 활동기간중이나 기업의 청산시에도 이같은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제 16 조 登 錄

외국인합작기업은 共和國 法令이 정한 절차에 따라 登錄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設立文書와 기타 서류의 종류는 소연방 및 공화국 법률로 정한다.

외국인합작기업은 등록 순간부터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시행기관이 인쇄물의 형태로 공개한다. 외국인합작기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기관에 의해 共和國 등록부와 聯邦 單

一 등록부에 각각 기록된다.

등록 거부에 대해서는 소련의 法院을 통해 제소할 수 있다.

제 17 조 支社와 代表部

외국인합작기업은 소련 영내나 외국에 지사, 대표부 및 기타 독립된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소련 영내의 지사, 대표부 및 기타 독립된 지부는 법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기업 설립에 관한 소연방 및 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 18 조 子會社

외국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은 소련 및 해외에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다. 소련영내의 자회사는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법인으로서는 설립된다.

제 19 조 企業의 統合

외국인합작기업은 소연방 및 공화국 법령이 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협회, 콘체른, 콘소시움 및 기타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외국인합작기업은 기존에 통합된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제 20 조 合作企業 參加者의 出資

합작기업 定款基金에 대한 각 참가자의 出資期間, 規模, 導入節次, 評價는 設立文書에서 規定된다.

합작기업 참가자에 의해 정관기금에 대한 출자금으로 반입되는 資產의 價値는 합작기업 참가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로 규정하여 등기된 후 1년 이내에 출자자가 설립자금의 50% 이상을 등기담당기관의 정관기금에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는 지불불능으로 간주되어 합작기업 등기부에서 말소한다.

등기부로부터 말소에 관한 정보는 공표된다.

제 21 조 豫備基金

외국인합작기업은 定款資本 25%까지 豫備基金을 형성한다. 예비기금은 소련 통화나 외화로 매년 공제하여 조성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통화의 종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22 조 소련 영토내에서의 제품 판매 및 납품

외국인합작기업은 장기적으로 자체 생산한 제품(물품,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고, 소련 내부 시장에서 그것의 판매 절차를 정하고 이 시장으로부터 제품(물품, 서비스)납품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소련영내에서 外貨에 의한 決濟

소련 영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제수단으로 외화를 이용하거나 외화지불문서를 이용하는 경우, 외화관리에 관한 소련법규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

제 24 조 상품의 輸出入

정관자본의 15%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한 합작기업은 자체 생산한 제품(물품, 서비스)을 허가없이도 수출할 수 있다. 외국인합작기업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해 허가없이도 제품(물품, 서비스)을 수입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합작기업 자체 생산 제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 25 조 外貨收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수입은 외화관리에 관한 소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 26 조 關稅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합작기업의 정관자본에 투자할 목적으로 소련내로 반입하려는 재산은 關稅를 부과하지 않고 輸入稅도 징수하지 않는다.

합작기업의 외국측 직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소련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27 조 保 險

합작기업의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는 소연방 및 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강제 보험이 아닌 경우 기업 스스로가 결정한다.

제 28 조 課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자는 소련과 각 공화국법규에 의거 정해진 稅金을 납부한다.

제 29 조 외국인 合作企業의 活動에 대한 監査

소연방 및 공화국 법령에 의해 외국인합작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세무관청 및 기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엄격한 자신의 권한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기관에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와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세무관청 및 기타 기관은 반드시 상업적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기업들의 재정 및 상업활동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소련 및 공화국 법률상 이러한 활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30 조 精算 및 報告

외국인 합작기업은 거래 및 會計計算書를 작성하고 소련의 법규에 따라 통계를 보고한다.

제 31 조 債務保證

외국 합작기업의 재산은 소련 및 공화국 법률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한 기업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건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기업의 財產權과 土地와 기타 天然資源이용권을 비롯한 기타 財產權도 이용될 수 있다.

제 32 조 知的所有權 및 物權과 무관한 기타 권리

외국인투자자의 知的所有權과 기타 物權과 無關한 權利(노하우, 상업상의 비밀 및 기타)는 소련 및 공화국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 외국합작기업의 지적소유권의 이용은 소련 및 공화국 법령에 따른다.

제 33 조 勞動關係

외국합작기업의 雇用과 解雇, 勤務 및 休暇制度, 給料 및 보상 문제를 포함하는 생산 및 노동관계는 集團契約書와 개인 勞動契約書에 의해 규정된다.

이 기업의 근로자의 집단 및 개인 노동계약의 조건은 소련 및 공화국 법령이 정하는 조건보다 열악해서는 안된다. 외국인합작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 휴가, 연금지급에 관한 문제는 일대일 개인적 노동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외화 형태로 받은 급여는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34 조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외국인합작기업의 근로자의 社會保險과 社會保障(외국인 근로자의 연금지급은 제외)은 소련 법률상의 기준에 의해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금은 외국인의 영구 거주지가 있는 나라의 해당 기금에 그 나라 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외국인합작기업은 소련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사회보험 공제와 소련 기업 및 조직에 설정된 공제율에 따라 소련 근로자의 연금지급을 위한 공제를 실시한다.

제 35 조 解 散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은, 소련과 각 공화국이 규정한 경우 및 절차에 의거 解散할 수가 있다.

기업 解散時에는 외국인투자를 수반한 기업의 축적된 자산은 자산의 실제적 가치에 따라 과세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외국인투자자의 유기증권 취득

제 36 조 國家有價證券의 취득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가유가증권의 취득은 위임된 국가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제 37 조 蘇聯法人 有價證券의 취득

외국인투자자는 소련법인의 주식, 기타의 유기증권을 외화 및 소련통화로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제 5 장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이용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

제 38 조 土地利用權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에 관한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토지의 임대차제도를 포함한 토지이용이 허용된다.

건물 및 건조물소유권이 이전할 때는 그 대상물과 같이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정해진 절차와 조건으로 토지의 이용권도 이전한다.

제 39 조 소련의 경제구역 및 대륙붕자원의 이용권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를 수반하는 기업에 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차 및 임대차관계에 관한 소련 및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계약에 따라 임대대상자에 실시된다.

제 40 조 貨 貸

임대제공자는 계약원칙하에 임대와 임대관계에 관한 소연방 및 공화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합작기업에 재산을 임대해줄 수 있다.

제 41 조 利權契約

외국인투자자에 천연자원의 시굴, 채굴, 개발 및 기타의 경제활동의 이권을 부여할 때는 소련과 각 공화국이 위임한 기관과 체결되는 이권계약에 의거 실시된다.

이권계약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활동조건이 정해진다. 이권계약에는 상응하는 소련과 각 공화국 권한의 범주내에서 소련과 각 공화국의 법규에 의거, 정해진 규정과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권계약조건의 일부변경은 다른 조건이 사전에 계약서에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제 6 장 自由經濟地域에서의 外國人投資

제 42 조 外國합작기업과 外國인투자자의 自由經濟地域에서의 活動

소련에서의 자유경제지역은 외국인투자자와 외국 합작기업 및 소련기업과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特別制度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자와 외국 합작기업의 경제활동 절차와 輸出入, 稅制, 關稅, 貨幣, 銀行 및 기타 부문의 特惠條件은 소연방 및 공화국 법률과 해당 소련 인민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조정된다.

자유경제지역의 설립에 관한 결정은 공화국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채택된다.

제 7 장 最終規定

제 43 조 分爭 審議

외국인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은 소련의 國際條約上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련내 법원에서 심의한다.

외국인투자자와 외국합작기업의 소련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 소련 법인과의 분쟁, 외국인 합작기업 참여자간의 분쟁, 외국인 합작기업의 참여자들과 이 기업과의 분쟁은 소련내 법원에서 혹은 외국에서의 중재재

판 절차를 통하거나, 소련 및 공화국 법률이 정하는 경우 仲裁法院, 經濟分
爭調整 法院 등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 44 조 國際條約

만일 국제조약상에 외국투자에 관한 소련 및 공화국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國際條約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1992年 12月 30日 初版發行

1993年 12月 20日 2版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編輯人 姜 興 求

發 行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地 域 情 報 中 心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42-1

君子빌딩 14層

印 刷 오름시스템(주) 273-7011

ISBN 89-322-0202-7 93320